

연구보고서 2019-09

---

# 통계기반정책평가 표준화 연구

이동수



Statistics Korea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 발간사

21세기 데이터 혁명시대에 빅데이터와 공공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통계는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통계는 개인과 기업의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결정에 필수적인 도구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통계청은 빅데이터의 활용, 조사자료와 행정자료 간의 연계 등과 같은 통계생산 방식의 혁신을 통해서 응답자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보다 정확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통계를 만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청의 싱크탱크로서 전략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통계개발원은 국내의 유일한 「국가통계 전문연구기관」입니다. 통계개발원은 2006년에 창립한 이래 국가통계방법론과 증거기반 정책연구 분야에서 창의적인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존의 조사통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한 각종 추계기법과 관련된 통계방법론적 연구는 물론 데이터에 기반한 국가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경제·사회현상에 대한 심층 분석 연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 현상 등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인구집단 및 인구동향에 관한 분석연구 및 인구동태 관련 방법론 연구를 밀도 깊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구체적인 결과를 중심으로 통계개발원은 「2019년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019년 연구보고서」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이용한 집세 물가지수 작성방안 연구 등 「행정자료 활용」 관련 연구를 비롯하여 세대별 니스(NEES) 특성 분석 등 「인구·사회통계」 기반 정책연구는 물론이고 통계기반정책평가 표준화 연구 등 「정책활용방법」 관련 통섭적인 연구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방법론 분야에 있어서 동 연구보고서는 국민법의식조사 조사표 개선연구 등 「인지실험 기반 조사방법론 연구」 및 차등정보보호 적용 실험 연구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혁신적인 연구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통계개발원은 본 연구보고서가 데이터 사용자의 통계활용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국가통계생산자의 혁신적인 통계개발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내년이면 15주년을 맞는 통계개발원이 “국가통계의 싱크탱크”로서 대내외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국가통계의 개선과 혁신적 개발을 위하여 제언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겸허히 귀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실용적이고 품질 높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연구진에게 따스한 감사를 전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 및 결과는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통계청 또는 통계개발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2020년 5월

통계청 통계개발원장



전 영 일

# 목 차

제1장 서론 .....	1
1. 정책과 통계지표의 관계 .....	1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제2장 통계기반정책평가 업무표준화 방안연구 .....	3
1. 정책의 분류 및 예시 .....	3
2. 통계지표 활용정책 선정 .....	11
3. 통계지표 선정 .....	34
제3장 업무활용 체크리스트 개발 .....	49
1. '평가대상 제외법령' 체크리스트 .....	49
2. '실질평가 면제' 체크리스트 .....	50
제4장 결론 .....	52
참고문헌 .....	55
부록 .....	56

## 요 약

본 연구는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담당자의 정책평가 업무 수행에 있어 정책의 전문성, 신속성, 통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평가 과정 및 방법에 대한 표준화를 검토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책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기존의 업무매뉴얼을 보완하고, '법령과 정책에 대한 분류' 기준 설정 및 '실질평가 면제' 기준을 보완하였다. 또한 '실질평가 면제' 기준을 정책유형별(지원정책, 규제정책, 정보정책, 자원정책)로 재분류하여 업무에서 정책평가 대상여부 판단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실질평가 면제기준의 중복을 제거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제외법령' 재분류를 실시하였다.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통계지표 제시를 위하여, 정책구성요소별(정책대상, 정책목표, 정책수단)로 통계지표 선정기준을 제시할 뿐 아니라, 기존에 실시한 통계기반 정책평가 사례를 검토하여 통계지표 선정 시 주의사항, 통계지표 선정 우수 사례와 그 반대의 사례를 제시하여 실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비평가 신청(예비평가요청서 등) 단계에서 통계기반정책평가 대상여부를 1차적(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실질평가 면제'와 '평가대상 제외법령')를 작성하여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유사제도 비교표를 작성하여 업무에 참조하도록 하였다.

주요 용어 : 통계기반정책평가, 평가대상 제외법령, 실질평가 면제, 체크리스트

## 제1장 서론

### 1. 정책과 통계지표의 관계

통계는 과거와 현재를 파악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자료이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가장 설득력 있는 도구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한편 20세기 이후, 국가는 그 역할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대되었고 그만큼 국가정책 역시 더욱 정밀해져야 했다. 이에 따라 어느 나라에서든 정부 부처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수립한 정책을 평가할 때 적절한 통계를 얻어 이를 세밀하게 활용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졌다.

21세기에 진입한 오늘날, 정부가 계획하는 중요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찬반 논란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주요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서로 이해를 달리 하는 집단 및 지역들 간의 충돌이 일어나 몸살을 앓듯 갈등을 겪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가 점점 더 발전하고 선진화되어 갈수록, 합리적인 정책과정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서로 이해가 상충하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조정해가면서 국가적, 사회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세계적으로도 2000년을 전후하여 정책분야에서 증거기반정책(evidence-based policy)이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증거기반 정책이란 “정책의 개발이나 수행의 본질에 관한 유용한 증거를 활용하여 정책이나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을 위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정의된다. 1999년 영국 Cabinet Office가 발간한 「Modernizing government」라는 백서에서 정부의 정책들은 증거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기화로 이 개념은 여러 나라로 빠르게 전파되었으며 2005년부터는 「Evidence & Policy」라는 학술저널이 발간되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식 정보화 사회로의 급속한 이행이라는 변화와 맞물려 정책분야에서 통계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통계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행정업무 수행하면서도 여러 형태의 통계를 이용하고 있다. 이는 통계가 단순히 사실 확인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보다는 확인된 사실이나 현상이 어떠한 원인에 의한 것인지를 규

명하고 이러한 원인이 일반화, 규칙화될 수 있는지 밝히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계는 개인, 기업, 연구기관, 국가 등이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맡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도 정책의 수립, 집행, 사후관리 등 증거를 기반으로 한 정책관리가 강조되면서 객관적인 증거로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기반인 통계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2007년 통계법과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는데, 개정된 통계법시행령의 제33조와 34조에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 관련 조항이 수록되어 있다. 이에 따라 통계청에서도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국가통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책을 위한 통계기반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는 양적인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몇 가지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첫째,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정책전문성 문제다. 정책에 활용되는 실효성 있는 통계지표를 제안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데, 통계청은 통계전문성은 높지만 정책전문성은 낮아서,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통계기반정책평가는 법령 심사라는 한계다. 법령 제·개정 시에 적용되므로 입법예고기간까지 결과를 통보해주어야 하는데, 정책을 심도 깊게 이해하고 실질적인 통계지표 권고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다.

셋째, 통계기반정책평가가 부처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이는 제도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데, 통계지표는 부처의 정책 합리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는 중장기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단기적으로는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하나의 불필요한 절차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도 시행 10년이 되면서 부처의 통계마인드가 형성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기대치가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만족을 높이는 것 역시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통계기반정책평가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령 제·개정 시 정책추진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통계지표의 필요성 및 통계지표의 선정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표준화 연구의 목적은 현재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업무매뉴얼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고, 정책평가에 대한 평가방법을 표준화하

여 평가의 신속성, 전문성 및 통일성을 기하고자 한다.

연구내용은 2절에서는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이론적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책의 개념 및 종류를 검토하여 각종 분류기준 설정을 위한 틀을 마련하고, 통계기반정책평가 업무표준화 방안을 위한 법령과 정책의 분류기준 작성, 통계지표 활용정책의 선정기준을 검토하기 위한 평가면제기준 작성, 정책평가 사례를 통해 통계지표 선정기준, 주의 사항 및 선정사례를 살펴본다. 3절에서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요청한 정책평가에 대한 이해력과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간략한 체크리스트 및 작성방법을 살펴보고, 4절에서는 결론을 작성하도록 한다.

## 제2장 통계기반정책평가 업무표준화 방안연구

### 1. 정책의 분류 및 예시

#### 가. 정책의 구성요소

정책의 정의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중 가장 핵심적 구성요소는 ‘정책목표’, ‘정책수단’ 및 ‘정책대상자(집단)’이다.

##### 1) 정책목표

##### 가) 정책목표의 의미

“정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desirable future state)”를 정책목표라고 한다. 예를 들면, 경제안정정책의 목표는 경제의 안정이고, 대도시교통정책의 목표는 교통의 원활이며, 보건정책의 목표는 국민건강의 향상인 것과 같다.

##### 나) 정책목표의 결과

정책목표 달성 후 나타나는 상태 변화를 정책효과(policy effect)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효과성(effectiveness)은 정책목표 달성의 정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차량이 지체되는 도로의 소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신설 정책을 추진한 결과 평균속도가 시속 15km에서 25km로 빨라졌다면, 이전보다 개선된 속도 10km가 정책효과가 될 것이다. 이 정책효과는 정책산출(policy output)에 의해 야기되는데, 이 경우 새롭게 건설된 도로가 정책산출물이 될 것이다.

정책효과에는 부수효과(side effect)도 있다. 이는 정책담당자가 애초에 의도하지 않았던 효과를 의미하는데, 성격에 따라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



컨대 차량지체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를 신설했는데, 의도하지 않게 지역상권을 활성화시켰다면 긍정적 부수효과가 나타난 것이며, 차량속도가 빨라지면서 이전보다 대형교통사고가 증가했다면 부정적 부수효과(일종의 부작용)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 2) 정책수단

### 가) 정책수단의 의의

정책수단(policy means)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방안’으로서 정책의 실질적인 내용이다. ‘교통의 원활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을 확대하고 도로를 신설, 확장하는 것 등이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 나) 정책수단의 종류

#### ① 실질적(또는 도구적) 정책수단(substantive policy means)

실질적 정책수단은 ‘목표-수단의 계층제’에 포함된 내용으로, 상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역할과 하위수단에 대해서는 목표로서 역할을 모두 수행하기 때문에 전술한 도구적 정책목표 또는 도구적 정책수단(instrumental policy means)이라고도 부른다. 이는 구체적인 정책의 종류(교육정책, 교통정책, 환경정책, 국방정책, 경제정책 등)에 따라 그 수단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물가안정을 위한 쌀 가격의 인하, 쌀 가격인하를 위한 정부미 방출 및 막걸리용 쌀 사용 중단과 같은 것이다.

#### ② 실행적(또는 보조적) 정책수단

이는 위에서 언급한 실질적 정책수단을 보조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수단 또는 실질적 정책수단의 행동화에 필요한 수단들이다. 그래서 이를 실행적 또는 보조적 정책집행수단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위에서 본 실질적 정책수단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목표-수단의 계층제’를 따라 하위수준으로 내려오면서 실질적 정책수단을 계속적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정책수단을 계속 구체화시키면 마지막에는 이를 직접 실현시키는 작업이나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까지 구체화된다.

그런데 직접 실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된 정책수단은 직접적인 활동이나 작업이 있어야 비로소 실현이 된다.

산업폐기물단속이라는 정책수단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이나 활동과 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예시하면, 먼저 산업폐기물이 공기업에서 생산되는 경우에는 감독기관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활동을 관리하면 되지만, 민간 기업이 폐기물을 생산하는 경우는 정부가 이들을 설득(기업가의 도덕적 양심에 호소하는 등의)하거나 유인책(세금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과 같은)을 쓰거나 아니면 강압적으로 이를 금지해

야 한다.

이들 세 가지 방법은 순응확보수단으로서 실행적 정책수단에 해당한다. 한편 이러한 설득, 유인, 강압적 수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담당할 집행기구, 집행요원, 자금, 공권력 등이 필요한데 이들 역시 실행적 또는 보조적 정책수단이다.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실질적 정책수단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적 정책수단은 첫째, 순응확보수단으로서의 설득·유인·강압 등이며, 둘째, 집행기구, 집행요원, 자금, 공권력 등으로 모든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보조적으로 필요한 수단이다. 이러한 실행적 정책수단은 거의 모든 정책에서 다 같이 필요한 것이므로 실질적 정책수단이 정책의 종류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것과는 대조가 된다.

### 3) 정책대상자(집단)

#### 가) 정책대상자(집단)의 의미

정책대상자(집단)(policy target group)란 ‘정책의 적용을 받는 집단이나 사람’ 또는 ‘정책집행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집단이나 사람’을 의미한다. 이 정책대상자(집단)들은 정책으로 인하여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이들 집단들은 정책에 찬성 순응하기도 하고, 반대 불응하기도 하는데, 정책대상자(집단)들의 반응은 바람직한 정책의 입안 및 성공적인 집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 나) 정책대상자(집단)의 구분

이들 집단을 성질에 따라 크게 두 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정책의 혜택을 받는 집단이고, 둘째는 정책 때문에 희생을 받는 집단이다.

첫 번째 정책의 혜택을 받는 집단은 흔히 수혜자(집단)라고 부르며, 이들은 정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재화를 받는데, 정책의 채택이나 집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찬성하거나 순응하는 집단이다.

두 번째 정책대상자(집단)는 정책 때문에 희생을 당해야 하는 사람들로서 넓은 의미의 정책비용부담자(집단)이다. 이 희생을 당하는 집단은 주로 정책수단의 실현과정에서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들은 정책의 채택이나 집행에 대하여 소극적이거나 적극적인 반대 또는 불응하는 집단이다. 예를 들어, 도심지 공해를 방지하려는 목표를 위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배기가스를 내뿜는 자동차를 폐차시키는 정책수단을 채택하게 되면 이 정책수단의 실현 때문에 폐차되는 노후차량의 차주들이 희생집단이 된다.

## 나. 정책유형

많은 학자들이 정책분류를 시도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정책성격에 따른 분류 중 대표적이라 볼 수 있는 Lowi(로위)의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에 대한 개념과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표 1〉 학자별 정책분류

학 자	정 책 분 류
로위(T.J. Lowi)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
알몬드와 포우웰 (G.A. Almond & G.B. Powell)	분배정책, 규제정책, 추출정책, 상징정책
리플리와 프랭클린 (R. Ripley & G.A. Franklin)	분배정책, 경쟁적 규제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솔즈베리(R.H. Salisbury)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자율규제정책

### 1) 분배정책(Distributive Policy)(배분정책)

분배정책은 정부가 특정한 개인, 기업체, 조직, 지역사회에 공공서비스와 편익을 배분하는 정책을 말한다. 분배정책으로 혜택을 보는 수혜자들은 보다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정책으로 인한 승자와 패자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고 그 비용의 부담이 자신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세금이나 국고, 공공자산으로부터 마련되기 때문에 상호간의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다.

분배정책은 급격한 변화가 힘들며 점진적인 변화가 대부분인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부에 의한 고속도로, 비행장, 항만시설 등의 사회간접자본 구축(4대강 사업도 포함), 기업에 대한 보조금, 융자금 지원,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서비스 제공, 박물관이나 미술관 건립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이와 같이 분배정책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산출, 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 2) 규제정책

규제정책은 특정한 개인, 기업체, 조직의 활동에 통제 및 제한을 가하여 이들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종류의 정책이다. 규제정책은 경쟁적 규제정책과 보호적 규제정책으로

다시 분류하고 있다.

보호적 규제정책이라 함은 개인, 기업체, 조직의 행동에 일련의 제한을 가함으로써 반사적으로 다수의 일반 국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정책을 말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규제정책이 여기에 속한다. 산업체들의 오염행위를 억제함으로써 일반국민들을 오염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환경규제정책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경쟁적 규제정책은 분배정책과 보호적 규제정책의 혼합형으로, 많은 이권이 걸려있는 서비스나 용역을 특정한 개인이나 기업체, 단체에 부여하면서 이들에게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정책이다. 즉, 이권을 부여하는 대신 정부는 이들 당사자들에게 적정 요금수준, 운항회수, 서비스의 질에 대한 기준 설정 등을 통하여 적절히 통제하게 된다.

Lowi(로위)는 정책의 특징을 정부의 강제력 행사에서 찾았는데, 이 강제력이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부분 중 하나가 규제정책이다.

### 3) 재분배정책

재분배정책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으로, 누진세를 적용하여 고소득층으로부터 보다 많은 조세를 징수하여 저소득층에게 사회보장지출을 하여 소득의 재분배를 도모하는 정책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좁은 의미의 재분배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소득분배의 실질적인 변경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실시되는 정책들도 넓은 의미에서 재분배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 4) 구성정책

당초 Lowi(로위)의 정책유형 분류는 정책학의 학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도된 것이 아니라, 다원주의자와 엘리트주의자 간의 논쟁을 통합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결과 일부 정책들은 Lowi가 분류한 분배, 규제, 재분배 정책 어디에도 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Lowi는 후에 구성정책을 추가하여 선거구의 조정, 정부의 새로운 기구나 조직의 설립, 공직자 보수와 군인 퇴직연금에 관한 정책 등을 모두 이에 포함하고 있다.

## 다. 법령 및 정책의 분류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의 제·개정을 통하여 정책 또는 제도(이하 “정책”이라 한다)를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통계청은 정책의 집행 및 평가에 필요한 통계지표 구비여부 및 통계개발·개선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고, 중앙행정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 통계지표를 작성

하여 정책에 활용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통계기반정책의 분류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의 분류기준을 활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정책 구성요소와 정책유형별 분류기준에 의하여 통계기반정책의 분류기준을 설정하도록 한다. 정책의 구성은 크게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정책수단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방안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정책유형은 규제정책, 지원정책(분배정책 및 재분배정책), 구성정책(정보, 자원 등)으로 분리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한 통계기반정책의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평가대상 정책과 관련 법령이 국가안보, 행정절차 등과 같은 “**평가대상 제외법령**” 해당여부에 의한 기준

※ 제외법령의 경우에도 정책의 내용에 따라서 통계지표가 필요한 정책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② “평가대상 제외법령”에 해당하는 법령은 아니지만, “**정책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법령**” 해당여부에 의한 기준(원칙적으로는 모든 제·개정 법령에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제외할 수 있을 정도로 미미한 정책이 있을 수 있음)

③ “평가대상 제외법령” 및 “정책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법령”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통계지표 활용이 불필요한 법령, 정책 및 조문**” 해당여부에 의한 기준(정책의 내용과 법령 개정 조항에 따라서 통계지표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상위법령과 연계한 통계지표도 포함됨)

※ 실제로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는 법령의 제·개정을 통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②번 항목의 정책이 없는 경우는 ③번 항목의 통계지표 불필요는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④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규제, 지원, 정보, 자원 등)에 통계지표 활용이 필요하지만, 모든 정책수단이 통계기반정책평가 대상은 아니고, “**핵심적인 정책수단이거나 정책·제도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sup>(참고)</sup>**”하는 경우와 “**보조적인 정책수단이거나 정책·제도의 단순한 사항을 변경**” 해당여부에 의한 기준(정책수단의 주요수단(핵심수단)에 대한 판단기준은 일괄적이지 않고, 법령 및 정책의 성격에 따라 판단하는데, 즉 행정적인 절차도 행정법에서는 핵심수단이 될 수 있음)

※ 동 제도의 매뉴얼 내용 :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는 법령의 제·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제도를 도입하거나 종전의 **정책·제도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은 그 도입·변경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여부에 대하여 통계청의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참고) 「정책수단의 핵심수단 및 주요사항 변경」 :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기준에 영향을 받

지만, 예산 및 인력이 많이 소요되거나, 정책대상이 국민 전체가 되거나, 또는 국정과제, 연간 주요업무계획, 중장기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는 정책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표 2> 법령 및 정책의 분류

평가대상 제외법령 <평가 제외>	평가대상 포함법령 - ①번 기준					
	정책 미포함 법령 <평가 제외>	정책포함 법령 - ②번 기준				
		통계지표 불필요한 법령·정책 <평가 제외>	통계지표 필요한 법령·정책 - ③번 기준			
			핵심수단 및 주요사항 변경	정책목표 및 수단 - ④번 기준		
				규제	지원	정보
보조수단 및 단순사항 변경	<통계기반정책평가 대상>					
<평가 제외>						

즉, ①번의 “평가대상 제외법령”, ②번의 “정책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법령”, ③번의 “통계지표 활용이 불필요한 법령, 정책 및 조문”, ④번의 “보조적인 정책수단이거나 정책·제도의 단순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통계기반정책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③번의 “핵심적인 정책수단이거나 정책·제도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통계기반정책평가의 대상이 된다.

### 라. 유형별 정책 예시

정책유형에 대한 설명은 제2절에서 살펴보았고, 여기에서는 정책유형별 정책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 1) 분배정책(배분정책)

- ① 일반적 예시 : 정부의 각종 보조금(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포함), 각종 연구(건강연구 등)에 대한 보조금, 지방정부의 SOC(공항이나 도로 및 교통 시설, 항만시설, 병원, 하수도, 4대강 사업 등) 건설에 대한 지원금, 수출특혜 금융, 융자금 지원, 주택 자금의 대출, 농어촌소득증대사업, 농산물 가격지지, 산업지원, 무상급식 사업,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서비스 제공, 국유지 불하, 택지 분양, 보건서비스 제공, 군수품 구매, 박물관이나 미술관 건립 등

- ② 도시 및 지역정책 예시 : 지역하부구조개선에 대한 지원(교통, 통신, 에너지 공급, 용수공급, 입지, 환경, 교육, 도시개발, 관광·위락시설, 사회·문화시설 등)과 지방입지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 ③ 환경부문 예시 : 환경처리시설 지원정책(상하수도처리시설, 폐수처리설비, 하수관거 매립공사 등)

## 2) 재분배정책

- ① 일반적 예시 : 누진소득세 이외 세액공제 및 감면,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 영세민 생활보호사업, 실업자 구제사업, 직업훈련사업 등
- ② 도시 및 지역정책 예시 : 영세민 취로사업, 임대주택 건설, 저소득층 재개발 정책 등
- ③ 환경부문 예시 : 도시생활 환경개선사업(환경개선부담금, 오염부담금을 세원으로 하는 영세업자들에 대한 오염방지설비설치 지원 등)

## 3) (보호적) 규제정책

- ① 일반적 예시 : 기업 간의 불공정 경쟁 및 과대광고의 규제, 독과점 규제, 공공요금 규제, 기업활동 규제, 사회적 규제, 직업 및 작업장 안전규제, 식품 및 의약품 안전규제, 식품 및 의약품 사전허가제, 최저임금제도, 소비자보호 제도, 노점상 단속, 형법,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식품위생법, 소비자보호법, 산업안전법 관련 정책 등
- ② 도시 및 지역정책 예시 : 인구집중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조치 등
- ③ 환경부문 예시 : 대부분의 명령강제방식의 환경정책 등
- ④ 집중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조치 : 수도권집중 억제정책, 사무실 개발허가제, 공장개발허가제 등
- ⑤ 규제장치 종류 : (i) 활동기준 설정 (ii) 인가, 허가 (iii) 재정통제 (iv) 검열, 감사 (v) 가격, 생산량 통제 (vi) 지시, 명령 (vii) 조직, 인사 관여

## 4) (경쟁적) 규제정책

- ① 일반적 예시 : 항공노선 취항권, 텔레비전 및 라디오 주파수의 할당 및 방송권, 버스나 선박의 운항노선 할당, 한국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중화학 및 자동차 사업자 선정, 특허기업(한전, 방송 등) 등
- ② 도시 및 지역정책 예시 : 사무실개발허가제, 공장개발허가제 등
- ③ 환경부문 예시 : 환경영향평가대행업 등

## 5) 구성정책

- ① 일반적 예시 : 정부기구 신설, 변경, 조정, 구조변화, 기능변화에 관한 정책, 정치체제 및 변경에 관한 정책, 조직의 설립, 운영규칙(rule of game)에 관련된 정책, 선거구 조정, 공무원 윤리의식, 공직자 보수와 군인 퇴직, 연금에 관한 정책 등

## 2. 통계지표 활용정책 선정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는 예비평가와 실질평가 단계를 거친다. 예비평가는 각 정책의 집행/평가가 통계에 기반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단계인데, **통계기반이 필요한 정책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방법은 정책평가 법령, 정책 배경 및 주요내용(개정 조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이 단계의 결과에 따라 실질평가 제외대상(‘실질평가 면제’, ‘평가대상 제외법령’)이 되거나 실질평가 평가대상이 된다.

따라서 ‘실질평가 면제’, ‘평가결과 유형’ 및 ‘평가대상 제외법령’ 등의 평가기준 점검과 다양한 평가사례를 검토하여 예비평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예비평가 결과에서 “실질평가 면제” 또는 “실질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정책을 대상으로 공통적인 유형을 파악하고, 또한 기존에 해당부서(통계심사과)에서 사용하는 평가기준을 단계적으로 검토하여 예비평가와 실질평가 심사를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고, 기존에 해당부서(통계심사과)에서 사용하는 평가기준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도록 한다.

### 가. 현재 분류기준(‘평가결과 유형’ 및 ‘실질평가 면제’)

#### 1) 예비평가 ‘평가결과 유형’(통계심사과 업무매뉴얼 내용, 6개 기준)

##### ① 평가지침상“평가대상 제외법령”

제외법령은 법령의 전체적인 내용이 통계에 기반을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주로 제정안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 유형으로,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하여 통계기반정책평가가 필요한 정책이 추가될 경우에는 평가대상 법령이 될 수 있다.

평가지침 개정 시 법령이 통계기반정책평가를 실시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통계청장 직권으로 평가대상 제외법령을 지정하여, 공지한다.



제외법령으로 지정된 법령이 개정되어 평가 요청이 들어온 경우, 우선 개정된 내용에 통계를 기반으로 할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여,

- (없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법령임을 공문으로만 통보
- (있을 경우) 평가대상 법령과 같은 절차대로 처리 후 예비평가 결과를 통보, 평가대상 제외법령 제외는 연말 평가대상 제외법령 일괄정비 시 처리

### ② 정책의 구체화가 필요한 경우 →‘하위법령 입안 시 평가’

통계기반정책평가 제도의 평가대상은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도입 또는 변경되는 정책이므로 법령의 내용 분석과 참고 자료의 활용을 통해 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

하위법령 입안 전 상태에서, 평가대상 ‘법률’만으로는 정책의 구체화가 용이하지 않아 평가가 어려운 경우 하위법령 입안 시에 평가한다.

### ③ 정책이 없는 경우 →‘실질평가 면제’

기관 명칭 변경, 양벌규정, 법률용어 순화, 위원회 정비, 용어의 정의, 법령 조항의 상향 규정, 적용시기 변경, 경과 규정, 인용조항 변경 등 통계기반정책평가 제도상 정책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할 정책이 없기 때문에 실질평가를 면제한다.

### ④ 해당 조항이 통계기반이 불필요한 경우 →‘실질평가 면제’

법령 제·개정을 통하여 도입 또는 변경된 정책과 관련하여, 그 내용이 통계를 기반으로 집행하거나 평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또는 통계 활용이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실질평가를 면제한다.

### ⑤ 필요한 통계가 구비된 경우 →‘통계지표 활용권고’

제·개정되는 법령을 통해 도입하거나 변경되는 정책이 통계에 기반을 둔 정책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필요 통계지표가 모두 구비되어 있거나, 향후 법령, 예규,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하고 구비될 수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평가한다.

평가결과가 동일지표로 제시된 ‘통계지표 활용권고’인 경우에도 결과반영여부 파악 대상기간 경과 후 평가요청 시에는 다시 제시한다.

실질평가 대상이지만 통계지표의 구비가 확실하여 예비평가 단계에서 종료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실질평가에 해당하고 통계기반정책평가시스템상 실질평가 처리 건으로 계상한다.

⑥ 필요한 통계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 ‘실질평가 대상’

제·개정되는 법령을 통해 도입하거나 변경되는 정책이 통계에 기반한 정책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적합한 통계가 구비되지 않아 통계개발·개선계획이 요구되는 경우에 평가한다.

관계기관에 예비평가 결과를 통보함과 동시에 실질평가 절차를 위한 통계개발·계획서 등을 요구해야 한다.

2) ‘실질평가 면제’ 평가기준(통계심사과 업무매뉴얼 내용, 10개 기준)

※ 사례분석을 통한 “실질평가 면제”의 구체적 판단 기준

예비심사 심의결과가 “실질평가 면제”로 결정된 정책은 “통계심사과의 실질평가 면제기준”에 반드시 포함되지만, 반대로 “통계심사과의 실질평가 면제기준”에 포함되는 정책이라고 해서 반드시 “실질평가 면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정책의 평가사례, 상위법령, 동일 법령 내 다른 조항, 정책체계 등을 고려하여 “실질평가 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함

① 기관의 설립 또는 지정이 특별히 통계에 기반을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

(예시1)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신청대상, 지정요건, 구비서류, 지정방법, 지정서 발급, 사후관리, 지정취소, 지정기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예시2) 임상시험실시기관·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실시기관·비임상시험실시기관·품질 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근거를 규정함(법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73조 및 제76조의2)

② 위원의 자격, 위원회의 업무, 심의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나 계획수립에 있어서 통계 활용을 요하지 않는 경우 등

(예시1)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각각 2명씩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6명과 징계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법률전문가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2명을 포함한 8명으로 구성하고,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1명을 간사로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1항)

(예시2) 지식경제부 차관을 의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정책협의회 구성하여,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관련 기본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협의

- ③ 상부기관의 권한, 업무 등을 하부기관이나 소속단체 등에 위탁·위임하는 경우
  - (예시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 중 국립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
  - (예시2)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 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 제3항)
  
- ④ 평가결과, 명단, 회의록 등을 공개하거나 자료 요청 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행정정보 활용을 위한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경우 등
  - (예시1)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체노력 반영사항과 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결정 내용을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예시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투표권구매 금지 대상자(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의 선수, 감독, 코치, 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 주최단체의 임직원)의 투표권 구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고 있는 단체의 장에게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조사·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 (예시3)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군계획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
  
- ⑤ 법령 시행을 위한 기준 등을 설정하거나 자료 제출, 예고통보, 사전협의, 소명기회, 보고의무, 청문제도 등 행정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 (예시1) 세관장이 납세자가 신고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국세청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세가격 결정의 정확성을 제고함
  - (예시2) 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출입통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
  - (예시3)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자본의 적정성·건전성, 유동성, 리스크관리 기준·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
  
- ⑥ 허가·면허·등록·신청·지정 또는 그 취소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요건의 강화나 완화 등이 정책에 미미한 영향만 미칠 경우

- (예시1)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을 확보하면 나머지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추가함
  - (예시2) 주택관리사와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 법인에 한하여 주택관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함(법안 제53조제3항)
  - (예시3) 2 이상의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의 단체 또는 구성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⑦ 업무, 사업, 범위, 과세표준, 정보, 대상, 자격 등의 구체화·명확화·명문화, 축소·확대, 추가·삭제 등 제·개정 법률을 통해 도입·변경된 정책에 대해 이미 평가를 마친 상태에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에 대해 평가의 회를 한 경우
- (예시1)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우선고용 특수직종에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적합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직종을 추가함(안 제18조제3호)
  - (예시2) 보금자리주택 공급유형에 기존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10년 임대주택 외에 5년 임대주택을 추가함(안 제2조)
  - (예시3)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 토지 발생사유를 도로·철도·하천 개수로에 한정하여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제2항)
  - (예시4) 도로공사가 유료도로 효용 증진을 위해 할 수 있는 도로의 부지 이용사업의 범위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의 설치·관리 사업을 추가함(안 제11조의2제2호)
- ⑧ 보조금, 지원금, 세금 등에 대한 금액이나 비율을 조정하는 경우 등
- (예시1) 어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을 월 고정급 기준으로 120퍼센트에서 135퍼센트 등으로 각각 15퍼센트 포인트씩 상향하여 산정하도록 개선함(안 제19조의2)
  - (예시2) 태양광에너지 의무공급량을 기존 '12년에서 '16년 사이의 총 의무공급 범위 내에서 연도별로 조정(안 제18조의4제3항별표4)
- ⑨ 과징금 부과기준, 비용 산정 기준, 피해보상 기준 등을 변경하거나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삭제하거나 합리적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경우

(예시1)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경작목적 토지점용료 산정기준 변경(안 제47조 관련 별표9)

(예시2) 임대주택을 현행 수준으로 공급하면서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세대수 또는 총면적 기준으로 선택적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

(예시3) 태양에너지 설비를 기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가능하도록 함(안 별표1제2호자목)

⑩ 기록물, 회의록 등의 작성·관리, 고유식별 정보처리, 벌칙 등 원칙허용·예외금지 등 규제완화, 기관의 일원화 등 조직변경 등

(예시1) 중소기업청장은 등록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함(안 제11조의2제3항)

## 나. 분류기준 보완

### 1) 검토자료(예비평가 평가결과)

- ① 자료내용 : “예비평가” 평가결과(「예비평가 결과통보서」(실질평가 면제))
- ② 자료량 : 2018년 9월~12월(356건 사례) - “면제항목” 입력시점(빈칸 포함)
- ③ 수집항목 : 관리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입안유형, 예고시작, 접수일자, 통보일자, 유형, 평가결과, 면제항목, 기타사유
- ④ 수집처 : 담당부서(통계심사과) 정책평가시스템

### 2) 예비평가 “평가결과 유형” 통합(‘실질평가 면제’ 유형)

#### 가) 평가결과 유형의 통합

예비평가 평가결과 유형은 6개 기준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에서는 ③번 기준(정책이 없는 경우에는 “실질평가 면제”)과 ④번 기준(해당 조항이 통계기반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실질평가 면제”)의 통합을 검토한다.

※ 《③ 정책이 없는 경우 → ‘실질평가 면제’》 내용 : 기관 명칭 변경, 양벌규정, 법률용어 순화, 위원회 정비, 용어의 정의, 법령 조항의 상향 규정, 적용시기 변경, 경과 규정, 인용조항 변경 등 통계기반정책평가 제도상 정책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할 정책이 없기 때문에 실질평가를 면제한다.

※ 《④ 해당 조항이 통계기반이 불필요한 경우 → ‘실질평가 면제’》 내용 : 법령 제·개정을 통하여 도입

또는 변경된 정책과 관련하여, 그 내용이 통계에 기반을 두어 집행하거나 평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또는 통계 활용이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실질평가를 면제한다.

나) 통합 근거

(근거1)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sup>1)</sup>의 ‘평가결과 유형’에서 ‘③ 정책이 없는 경우’로 명명하는 것은 의미전달에 어려움이 있고, 실제적으로는 “정책입안, 집행, 평가 단계에 있어서 통계지표 활용이 필요 없는 경우”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2) ③번 기준의 “정책이 없는 경우”와 ④번 기준의 “해당 조항이 통계기반이 불필요한 경우”의 포괄범위에 중복이 발생할 수 있고, “실질평가 면제 기준”도 ③번 기준과 ④번 기준을 포괄하여 다루고 있다.

다) 세부내용별 포괄범위

예비평가 평가결과 유형에서 ③번 기준(정책이 없는 경우에는 “실질평가 면제”)의 세부내용을 기준으로 “실질평가 면제 평가기준”의 포괄범위는 아래의 도표와 같다.

<표 3> ‘평가결과 유형’의 내용검토

‘평가결과 유형’(③번)	‘실질평가 면제’ 평가기준
- 기관 명칭 변경	① <b>기관의 설립 또는 지정</b> 등 특별히 통계에 기반을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양벌규정 - 법령 조항의 상향 규정, 적용시기 변경, 경과 규정, 인용조항 변경 등	⑤ <b>법령 시행을 위한 기준 등을 설정</b> 하거나 자료 제출, 예고통보, 사전협의, 소명기회, 보고의무, 청문제도 등 행정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 법률용어 순화 - 용어의 정의	⑦ 업무, 사업, 범위, 과세표준, 정보, 대상, 자격 등의 <b>구체화·명확화·명문화</b> , 축소·확대, 추가·삭제 등 제·개정 법률을 통해 도입·변경된 정책에 대해 이미 평가를 마친 상태에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에 대해 평가의뢰를 한 경우
- 위원회 정비	② <b>위원의 자격, 위원회의 업무, 심의절차 등을 규정</b> 하는 경우나 계획수립에 있어서 통계활용을 요하지 않는 경우 등

1)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의 제·개정을 통하여 정책 또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통계청장은 정책의 집행·평가에 필요한 통계지표의 구비여부 및 통계개발·개선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라) ‘평가결과 유형’ 통합에 따른 내용보완

‘평가결과 유형’ 통합으로 인하여 ‘실질평가 면제’ 기준을 보완하게 되는데, 각 항목별 보완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4〉 ‘실질평가 면제’ 분류기준 보완

분류	기준	보완
1호	① 기관의 설립 또는 지정 등 특별히 통계에 기반을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기관의 <b>설립, 지정 또는 명칭변경</b> 등 특별히 통계에 기반을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
2호	② 위원의 자격, 위원회의 업무, 심의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나 계획수립에 있어서 통계활용을 요하지 않는 경우 등	② 위원의 <b>자격, 위원회의 구성, 운영, 정비, 업무, 심의절차</b> 등을 규정하는 경우나 계획수립에 있어서 통계활용을 요하지 않는 경우 등(평가대상 제외법령 참고2)
5호	⑤ 법령 시행을 위한 기준 등을 설정하거나 자료 제출, 예고통보, 사전협의, 소명기회, 보고의무, 청문제도 등 행정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⑤ 법령 시행을 위한 <b>기준(양벌과 과태료, 법령조항 상향, 적용시기, 경과시기, 인용조항 등에 대한 규정 및 변경)</b> 등을 설정하거나 자료 제출, 예고통보, 사전협의, 소명기회, 보고의무, 청문제도 등 행정절차를 규정하는 경우(평가대상 제외법령 참고)
7호	⑦ 업무, 사업, 범위, 과세표준, 정보, 대상, 자격 등의 구체화·명확화·명문화, 축소·확대, 추가·삭제 등 제·개정 법률을 통해 도입·변경된 정책에 대해 이미 평가를 마친 상태에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⑦ 업무, 사업, 범위, 과세표준, 정보, 대상, 자격, <b>용어</b> 등의 구체화·명확화·명문화, 축소·확대, 추가·삭제 등 제·개정 법률을 통해 도입·변경된 정책에 대해 이미 평가를 마친 상태에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 통합 결과

(보완 필요) ③번 평가기준을 삭제하고, ④번 평가기준을 “정책 또는 제도(각 조항)에서 통계기반이 필요 없는 경우”로 수정하며, “실질평가 면제 평가기준”의 세부기준 내용을 보완한다.

2) 예비평가 ‘평가결과 유형’의 「① 평가지침상 “평가대상 제외법령” 확인」

### 3) 「실질평가 면제」 분류기준 추가(평가사례 기준)

예비평가 평가결과의 「예비평가 결과통보서」에서 평가결과가 ‘실질평가 면제’이고, 면제항목이 ‘기타’로 평가된 정책에 대하여 공통적인 특성을 검토하고, 새로운 분류 기준을 제시한다.

**(기준추가) 법령(시행령, 규칙) 및 행정적 절차(허가, 신고, 등록 등)를 규정 및 설정하는 것 이외에, 법령 및 행정적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법, 실천요령, 처리방안, 표시방법 등과 같은 세부적인 이행과정을 제시하는 경우**

(설명) 기존의 “실질평가 면제사유”에는 법령이나 행정적 절차를 규정, 지정, 수립, 구축 및 설정하는 것에 대한 기준은 있으나, 구체적인 이행방법, 실천요령, 표시방법 및 처리방안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기준이나 규정이 없어서, 세부적인 이행방법 및 실천방안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함

(관련용어) : 방법, 절차, 처리, 표시, 실천 등

- (예시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 시 신고 민원 처리절차의 명확화(제19조제2항 및 제27조제5항 신설)
- (예시2) 환경교육진흥법 :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명시함(제4조제2항 신설)
- (예시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 표시방법(안 제66조제3항, 제4항 신설)
- (예시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 방법 등(안 제 27조)
- (예시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 신재생에너지 연료에 대한 품질검사의 방법 등을 규정(안 제2조의6)
- (예시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재활용의무 이행 대상 확대 품목을 반영하여 재활용방법 및 기준변경(안 별표1), 부과금 부과·징수 사무 운영상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한 서식 변경(안 별지 제2호 서식, 안 별지 제2호의3 서식),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실적 인정 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5호 서식, 안 별지 제23호 서식)



- (예시7)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절차(안 제6조, 별지5호 서식), 위해관리계획서 현장조사 및 이행점검 기준 구체화(안 제47조, 제47조의2, 별표 7)
- (예시8)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생물종의 조사 내용과 방법 등(제6조 신설)
- (예시9)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표시의무자와 표시방법(안 제3조 및 제4조) - (7호 기준)
- (예시10) 전기사업법 시행령 :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의 충전요금 및 표시방법 규정(안 제61조의4) - (7호 기준)

#### 4) 「실질평가 면제」 분류기준 보완

##### 가) 항목 보완

‘실질평가 면제사유’의 각 항목에서 세부적인 기준 및 범위를 살펴보고, 보완이 필요한 항목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실질평가 면제사유’ 6호는 “특정 규정에 관한 요건의 강화나 완화”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는데, 추가적으로 특정 규정에 관한 요건, 자격, 의무 및 관리의 강화나 완화로 내용보완이 필요하고,
- 8호는 “보조금 등에 대한 금액이나 비율을 조정”에 대한 기준 이외에 보조금 등의 신설, 지원 및 금액이나 비율 조정에 대한 내용보완이 필요하며,
- 9호는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변경하거나 행정절차와 관련”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여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신설 및 변경(확대, 축소 등)하거나 행정절차(인허가, 규정, 기준, 전공의 등)와 관련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5〉 항목별 “실질평가 면제” 보완사항

분류	기준	보완	예시
6호	허가·면허·등록·신청·지정 또는 그 취소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요건의 강화나 완화 등이 정책에 미미한 영향만 미칠 경우	허가, 면허, 등록, 신청, 지정 또는 취소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b>요건, 자격, 의무 및 관리</b> 의 강화나 완화 등이 정책에 미미한 영향만 미칠 경우	- 담배사업 관련 신고사항에 대하여 수리 규정 명시 및 관리 강화(안 제11조의3·제18조 및 제22조의2)

분류	기존	보완	예시
8호	보조금, 지원금, 세금 등에 대한 금액이나 비율을 조정하는 경우 등	보조금, 지원금, 세금 등의 <b>신설, 지원 및 금액이나 비율을 조정</b> 하는 경우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교육기관 등에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제17조)
9호	과징금 부과기준, 비용 산정 기준, 피해보상 기준 등을 변경하거나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삭제하거나 합리적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 비용 산정 기준, 피해보상 기준 등을 <b>신설 및 변경(확대, 축소 등)하거나 행정절차(규정, 기준, 전공의 등)</b> 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삭제하거나 합리적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경우	-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에 바이오중유 추가 (안 제18조) -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사사무 중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 완화(안 제12조) - 외과 전공의(레지던트) 수련 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안 제4조제1항)

나) 항목 삭제

‘실질평가 면제사유’의 세부적인 기준 및 범위를 검토한 결과, 내용의 중복으로 인하여 삭제가 필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대상) 10호(기록물, 회의록 등의 작성·관리, 고유식별 정보처리, 벌칙 등 원칙허용·예외금지 등 규제완화, 기관의 일원화 등 조직변경 등)

(설명) “기록물, 회의록 등의 작성·관리”는 4호와 중복

“고유식별 정보처리”는 4호를 개인정보까지 확대하면 의미가 중복

“벌칙 등 원칙허용·예외금지 등 규제완화”는 6호와 중복

“기관의 일원화 등 조직변경”은 1호와 중복의 우려가 있음

다. 「실질평가 면제」 보완결과

앞에서 검토한 예비평가 과정에서 “실질평가 면제” 기준에 대한 보완사항을 반영하고, 유사한 형태를 기준으로 “실질평가 면제” 기준을 보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① 기관의 **설립, 지정 또는 명칭변경** 등 특별히 통계에 기반을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
- ② 위원의 **자격, 위원회의 구성, 운영, 정비, 업무, 심의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나 계획 수립에 있어서 통계활용을 요하지 않는 경우 등

- ③ 상부기관의 권한, 업무 등을 하부기관이나 소속단체 등에 위탁·위임하는 경우
- ④ 정보평가결과, 명단, 회의록 등을 공개하거나 자료 요청 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행정정보 활용을 위한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경우 등
- ⑤ 법령 시행을 위한 기준(양별과 과태료, 법령조항 상향, 적용시기, 경과시기, 인용조항 등에 대한 규정 및 변경) 등을 설정하거나 자료 제출, 예고통보, 사전협의, 소명기회, 보고의무, 청문제도 등 행정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 ⑥ 허가·면허·등록·신청·지정 또는 그 취소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요건, 자격, 의무 및 관리의 강화나 완화 등이 정책에 미미한 영향만 미칠 경우
- ⑦ 업무, 사업, 범위, 과세표준, 정보, 대상, 자격, 용어 등의 구체화·명확화·명문화, 축소·확대, 추가·삭제 등의 경우
- ⑧ 보조금, 지원금, 세금 등의 신설, 지원 및 금액이나 비율을 조정하는 경우 등
- ⑨ 과징금 부과기준, 비용 산정 기준, 피해보상 기준 등을 신설 및 변경(확대, 축소 등) 하거나 행정절차(인허가, 규정, 기준, 전공의 등)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삭제하거나 합리적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경우
- ⑩ 법령(시행령, 규칙) 및 행정적 절차(허가, 신고, 등록 등)를 규정 및 설정하는 것 이외에, 법령 및 행정적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법, 실천요령, 처리방안, 표시방법 등과 같은 세부적인 이행과정을 제시하는 경우

<표 6> “실질평가 면제” 분류기준 보완

	기존 기준	보완 기준
①	- 기관의 설립 또는 지정이 특별히 통계에 기반을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기관의 설립, 지정 또는 명칭변경 등 특별히 통계에 기반을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②	- 위원의 자격, 위원회의 업무, 심의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나 계획수립에 있어서 통계활용을 요하지 않는 경우 등	- 위원의 자격, 위원회의 구성, 운영, 정비, 업무, 심의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나 계획수립에 있어서 통계활용을 요하지 않는 경우 등
③	- 상부기관의 권한, 업무 등을 하부기관이나 소속단체 등에 위탁·위임하는 경우	- 좌동

	기존 기준	보완 기준
④	- 정보평가결과, 명단, 회의록 등을 공개하거나 자료 요청 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행정정보 활용을 위한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경우 등	- 좌동
⑤	- 법령 시행을 위한 기준 등을 설정하거나 자료 제출, 예고통보, 사전협의, 소명기회, 보고의무, 청문제도 등 행정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 법령 시행을 위한 기준(양별과 과태료, <b>법령조항 사항, 적용 및 경과 시기, 인용조항 등에 대한 규정 및 변경</b> ) 등을 설정하거나 자료 제출, 예고통보, 사전협의, 소명기회, 보고의무, 청문제도 등 행정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⑥	- 허가·면허·등록·신청·지정 또는 그 취소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요건의 강화나 완화 등이 정책에 미미한 영향만 미칠 경우	- 허가, 면허, 등록, 신청, 지정 또는 취소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요건, <b>자격, 의무 및 관리</b> 의 강화나 완화 등이 정책에 미미한 영향만 미칠 경우
⑦	- 업무, 사업, 범위, 과세표준, 정보, 대상, 자격 등의 구체화·명확화·명문화, 축소·확대, 추가·삭제 등 제·개정 법률을 통해 도입·변경된 정책에 대해 이미 평가를 마친 상태에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에 대해 평가의뢰를 한 경우	- 업무, 사업, 범위, 과세표준, 정보, 대상, <b>자격, 용어</b> 등의 구체화·명문화, 축소·확대, 추가·삭제 등의 경우
⑧	- 보조금, 지원금, 세금 등에 대한 금액이나 비율을 조정하는 경우 등	- 보조금, 지원금, 세금 등의 <b>신설, 지원 및 금액</b> 이나 비율을 조정하는 경우 등
⑨	- 과징금 부과기준, 비용 산정 기준, 피해보상 기준 등을 변경하거나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삭제하거나 합리적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경우	- 과징금 부과기준, 비용 산정 기준, 피해보상 기준 등을 <b>신설 및 변경(확대, 축소 등)</b> 하거나 <b>행정절차(규정, 기준, 전공의 등)</b> 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삭제하거나 합리적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경우
⑩	- <b>(삭제)</b> 기록물, 회의록 등의 작성·관리, 고유식별 정보처리, 벌칙 등 원칙허용·예외금지 등 규제완화, 기관의 일원화 등 조직변경 등	- <b>(추가)</b> 법령(시행령, 규칙) 및 행정적 절차(허가, 신고, 등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법, 실천요령, 처리방안, 표시방법 등과 같은 세부적인 이행과정을 제시하는 경우

## 라. 「실질평가 면제」 재분류 기준 설정

### 1) “실질평가 면제” 범위

통계기반정책평가의 분류기준(법령 및 정책의 분류)은 ① 평가대상 정책과 관련 법령이 “평가대상 제외법령” 여부, ②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 여부, ③ “통계지표 활용이 필요한 법령, 정책 및 조문” 여부, ④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핵심적인 정책수단이거나 정책·제도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인지 아니면 “보조적인 정책수단이거나 정책·제도의 단순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인지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통계기반정책의 4가지 분류기준은 완전히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다소간의 중복이 나타나고 있지만, 법령, 정책 및 각 조문의 배경과 목표에 따라서 통계기반정책평가의 분류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는 원칙적으로 ‘예비평가’를 거쳐서 ‘실질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이행점검’ 과정을 거친다. 여기에서 통계지표를 실질적으로 활용(실질평가 단계)하는 정책은 정책수단이 “핵심적인 정책수단이거나 정책·제도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 경우에는 통계지표 활용과는 관련이 없는 정책(예비평가에서 평가완료)에 해당한다.

예비평가 평가결과 유형은 ①번은 “평가대상 제외법령”, ②번, ③번 및 ④번의 ‘보조적인 정책수단이거나 정책·제도의 단순한 사항을 변경’은 “실질평가 면제”, ④번의 ‘핵심적인 정책수단이거나 정책·제도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은 “실질평가 대상”이 된다.

실질적으로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평가결과는 “평가대상 제외법령”과 “실질평가 대상”의 경우보다 “실질평가 면제”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 2) “실질평가 면제” 재분류 기준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에서 “실질평가 면제” 기준을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은 어렵다. 특히, 제3장에서 살펴본 통계기반정책의 분류에 의한 정책수단(규제, 지원, 정보, 자원)은 실제적으로 모든 정책(법령)을 포괄하고 있어서 “평가대상 제외법령”과 중복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정책수단(규제, 지원, 정보, 자원)별 세부분류(핵심수단 여부 및 주요사항 변경여부) 기준도 정책의 배경 및 여건에 따라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질평가 면제” 기준의 편의성과 통일성을 위하여 정책수단의 분류기준에 「법령 및 정책의 분류」 기준과 「정책유형별 종류」 기준을 적용하여 새로운 분류기준을 설정하고,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에 적용하고자 한다.

- ① 모든 법령 및 관련 정책을 포함하는 범위에서,
- ② “평가대상 제외법령”에 해당하는 법령을 우선적으로 제외하고,
- ③ 정책수단은 ‘정책유형별 종류’를 반영하여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경쟁적 규제정책”, “정보정책”, “자원정책”으로 분리하고,
- ④ “실질평가 면제” 항목의 종류는 “정책 미포함 및 통계지표 불필요 법령·정책”에 해당하는 법령·정책(조문)과 정책수단에서 “보조수준의 정책수단 및 정책수단의 단순사항 변경”에 해당하는 정책(조문)으로 설정하며,
- ⑤ “핵심수준의 정책수단 및 정책수단의 주요사항 변경<sup>(참고)</sup>”에 해당하는 정책(조문)은 “실질평가 대상” 기준으로 설정한다.

(참고) 「정책수단의 핵심수단 및 주요사항 변경」 : 주관적인 판단기준에 영향을 받지만, 예산 및 인력이 많이 소요되거나, 정책대상이 국민 전체가 되거나, 또는 국정과제, 연간 주요업무 계획, 중장기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는 정책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표 7〉 “실질평가 면제” 재분류 기준 설정

	법령 및 관련 정책 (전체)	정책 미포함 및 통계지표 불필요 법령·정책 (실질평가 면제)	정책수단의 보조수준 및 단순사항 변경 (실질평가 면제)
<b>분배 정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각종 <b>보조금, 지방정부 SOC</b>(공항, 도로, 항만, 병원, 하수도, 4대강 사업 등) 건설 지원금, 수출특혜 금융, 융자금 지원, 주택자금 대출,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농산물 가격지지, 산업지원, 무상급식, 국공립학교 교육서비스, 국유지 불하, 택지분양, 보건서비스, 군수품 구매 등</li> <li>- 지역하부구조개선 지원(교통, 통신, 에너지, 용수, 입지, 환경, 교육, 도시개발, 관광·위락시설, 사회·문화시설 등)과 지방입지기업 재정적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 지원금, 보상금, 손실금, 변상금, 요양급여, 의료급여, 휴직급여, 우선지원, 공공수당 등의 <b>지급, 관리, 지원규정 및 금액이나 비율조정</b></li> <li>- 각종 정부지원사업(공공 보험(건강보험, 요양보험 등), 공유지 사용계약 및 임대, 공공시설 설치, 공공 및 임대 주택, 자활기업 등의 <b>절차, 자격, 관리 기준의 조정, 변경 및 세분화</b></li> <li>- 각종 장치(충전시설, 선박 등) 및 시설(도로, 건물, 철도, 교통 등)의 <b>설치, 유지 및 점검관리 완화 등</b></li> <li>- 재정적 지원사업, 연구특구,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보육서비스기관, 공립요양병원 및 복지사업(기관), 국유재산 운영기준 <b>변경 및 확대 등</b></li> <li>- 물 관리 범위, 구제급여 지급기준, 보</li> </ul>

	법령 및 관련 정책 (전체)	정책 미포함 및 통계지표 불필요 법령·정책 (실질평가 면제)	정책수단의 보조수준 및 단순사항 변경 (실질평가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처리 시설지원(상하수도, 폐수, 하수공사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유족)대상 지정범위, 해양공간 계획수립(관리, 절차) 등의 <b>조정 및 확대</b></li> <li>- 항만시설 보안 및 검문·검색 등 국가 <b>보안(제외법령)과 관련이 있는 조항</b></li> </ul>
재분배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진소득세 이외 <b>세액공제 및 감면</b>,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 영세민 생활보호 사업, 실업자 구제사업, 직업훈련사업 등</li> <li>- 영세민 취로사업, 임대주택 건설, 저소득층 재개발정책 등</li> <li>- 도시생활 환경개선사업(환경개선부담금, 오염부담금 활용 오염방지설비설치 지원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직업훈련기관과 교사의 <b>자격기준 및 지정요건 변경 등</b></li> <li>- 사회보험료, 부가세, 기부금 등 납부세액 공제기준 <b>확대 및 변경</b></li> </ul>
보호 적 규제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간의 불공정 경쟁 및 과대광고 규제, 독과점 규제, 공공요금 규제, 기업활동 규제, 사회적 규제, 직업 및 작업장 안전규제, 식품 및 의약품 안전규제 및 사전허가제, 최저임금제도, 소비자 보호제도, 노점상 단속, <b>형법</b>,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식품위생법, 소비자보호법, 산업안전법 관련 정책 등</li> <li>- 대부분의 명령강제방식의 환경정책 등</li> <li>- 집중지역의 각종 규제조치(인구집중지역, 수도권집중억제정책, 사무실개발허가제, 공장개발허가제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태료, 벌금, 양벌규정, 행정형벌, 각종 심의 등의 <b>부과, 징수, 권한, 규정 및 변경 등</b></li> <li>- 각종 규제 장치(허가, 신고, 면허, 등록, 단속, 인가, 명령 등)에 대한 <b>신청, 지정 및 취소 등</b></li> <li>- 각종 제도(시험(면제), 최저임금, 전매제한, 진입규제, 피해자 보호, 보호대상 등)에 대한 <b>규정, 요건, 자격, 의무 및 관리의 강화나 완화 등</b></li> <li>- 안전을 위한 규제(대상, 관리, 구역, 방화구조, 건물구조, 장치, 교육, (책임)보험, 검사, 지하시설, 운행, 예보·경보 등) <b>범위조정, 설치기준 보완 및 변경</b></li> <li>- 위법(위반)과 침해행위의 <b>신고 및 공표, 일몰규제 및 내구연한 변경, 운전업무 자격제한 규정, 오염방지(방역, 질병 등) 규정, 개선 및 조치 등</b></li> </ul>

	법령 및 관련 정책 (전체)	정책 미포함 및 통계지표 불필요 법령·정책 (실질평가 면제)	정책수단의 보조수준 및 단순사항 변경 (실질평가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규제장치(활동기준 설정, 인가·허가, 재정통제, 검열·감사, 가격·생산량 통제, 지시·명령, 조직·인사 관여 등</li> </ul>		
<p><b>경쟁 적 규제 정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노선 취항권, 텔레비전 및 라디오 주파수 할당 및 방송권, 버스나 선박 운항 노선 할당, 한국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중화학 및 자동차 사업자 선정, 특허기업 (한전, 방송) 등</li> <li>- 사무실개발 허가제, 공장개발 허가제 등</li> <li>- 환경영향평가대행업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상파 중간광고 및 공익광고 <b>규정 및 확대</b></li> <li>- 여객운송사업 면허 발급기준, 관리의 <b>완화 및 변경</b></li> <li>- 방송수수료, 전기공사 절차, 기준 및 근거 <b>정비(조정)</b></li> </ul>
<p><b>정보 정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통신 법령, 정보보호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공시 법령, 보안 법령 등과 관련된 정책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평가 결과(명단, 회의록), 사무처리 정보제출 등의 <b>공개, 요청 및 제공</b></li> <li>- 행정정보 이용 및 활용기준 <b>변경 및 개정</b></li> <li>- 개인정보보호 상호주의, 정보보호 공시 내용, 정보제공 동의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의 <b>규정, 기준변경 및 조정 등</b></li> <li>- 정보공개 관리 및 절차, 정보보호 항목의 등록, 추가 및 변경</li> </ul>
<p><b>자원 정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기구 신설, 변경, 조정, 구조변화, 기능변화 등에 관한 정책, 정치체제 및 변경에 관한 정책</li> <li>- 조직의 설립, 운영규칙(rule of game)에 관련된 정책</li> <li>- 선거구 조정</li> <li>- 공무원 윤리의식, 공직자 보수와 군인 퇴직, 연금에 관한 정책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의 설립, 지정, 기관명칭, 임명권자 변경 등</li> <li>- 일부 <b>기본법</b> 등의 업무(책무) 지정, 운영 및 관리계획 등</li> <li>- <b>법령</b> 미비사항 (용어순화, 조항상향, 적용시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부기관의 권한, 업무 등을 하부기관 및 소속단체에 <b>위탁·위임</b></li> <li>-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영업정지 등), 수수료, 비용산정, 요금납부, 피해보상, 포상금, 기금 출연금, 할인율(기준) 등의 <b>기준 신설 및 변경 등</b></li> <li>- 세금(과세표준, 소비세, 양도세, 관세, 등) <b>지급규정, 범위, 관리, 감면 및 비율조정</b></li> <li>- 행정절차(자료제출(사업실적, 결산보</li> </ul>



	법령 및 관련 정책 (전체)	정책 미포함 및 통계지표 불필요 법령·정책 (실질평가 면제)	정책수단의 보조수준 및 단순사항 변경 (실질평가 면제)
		경과규정, 인용 조항, 범위변경 등) 정비 및 법 령 명칭 단순변 경 등 - <b>위원회 및 심의 회의</b> 의 구성, 운영, 정비, 위원의 자 격, 심의절차 등 의 규정 및 관련 계획수립 등	고서 등) 의무, 예고통보, 사전협의, 소 명기회, 보고의무, 청문제도, 공청회, 대리자 지정 등)의 <b>규정 및 변경 등</b> - 행정운영(규정(간주규정), 제도개선, 서식, 절차, 범위, 근거기준, 자격, 시 설, 지정, 규격, 규정, 검사, 심사, 기한, 예외조항, 예방, 조례개정, 등기, 서면 관리, 전공의 등) 관련 <b>불필요한 절차 변경, 삭제 및 간소화(구체화)</b> - 행정(민원)처리(휴·폐업, 재개업, 사업 신고, 등록, 신청, 영업신고, 대장발급 등) 관련 <b>불필요한 절차 변경, 삭제 및 간소화(구체화)</b> - 사업(농어촌관광, 직접시공(공사), 곤 충산업 등), 사업(영업)시설, 사업평가, 점검 및 관리기준 등에 대한 <b>기준, 규 정, 범위 및 절차의 완화 및 확대 등</b> - 업무(각종 교육, 금융, 전자문서, 조정 신청, 재정지원(기금조성), (공공)광고 및 홍보, 등) 기준 및 처리절차에 대한 <b>규정 및 완화 등</b> - 각종 정책(조문)에 대한 구체적인 이 행방법, 실천요령, 처리방안, 표시방법 등의 <b>명시</b> - 용어(조문) 및 지명의 정의 및 정비, 업종분류 및 조정, 임대료 규정, 부당 계약 제한, 전문인력(필수도선사 등), 신기술, 장비 등의 <b>규정 및 확대</b> - 공직윤리 강화, 공무원 채용, 인사, 승 진임용 규정(정비), 선거운동 규정 - 이외에 각 정책조문이 <b>정책에 미미한 영향</b> 을 미칠 경우

### 3) “실질평가 면제” 재분류 기준설정 결과

“실질평가 면제” 재분류 기준설정은 기존의 기준과 새로운 기준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는데, 이러한 기준은 추후에 체크리스트 항목 작성의 분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즉 기존의 분류기준에서 배타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수단 분류를 일부 적용하였고, 추가적으로 “정책 미포함 및 통계지표 불필요 법령·정책”과 “보조수준의 정책수단 및 정책수단의 단순사항 변경” 분류도 고려하여 작성하였다.

(기관 및 법령정비) ① 기관의 설립, 기본법 업무, 법령 정비 관련 사항(정책 미포함 및 통계지표 불필요 정책)

- 기관의 설립(지정, 기관명칭, 임명권자 변경 등)
- 기본법의 업무(책무) 지정(운영 및 관리계획 등)
- 법령 미비사항(용어순화, 조항상향, 적용시기, 경과규정, 인용조항, 범위변경 등) 정비 및 법령 명칭 단순변경 등

(위원회 및 심의회) ② 위원회의 구성, 운영, 정비, 업무, 위원의 자격, 심의절차 등의 규정 및 관련 계획수립 등(정책 미포함 및 통계지표 불필요 정책)

(위탁 및 위임) ③ 상부기관의 권한, 업무 등을 하부기관 및 소속단체에 위탁·위임

(지원정책) ④ 정부 지원사업, 공공 장치 및 시설, 재정사업, 사회보장 관련 사항

- 각종 정부지원사업(공공 보험(건강보험, 요양보험 등), 공유지 사용계약 및 임대, 공공시설 설치, 공공 및 임대 주택, 자활기업 등)의 절차, 자격, 관리 기준의 조정, 변경 및 세분화
- 각종 장치(충전시설, 선박 등) 및 시설(도로, 건물, 철도, 교통 등)의 설치, 유지 및 점검관리 완화 등
- 재정적 지원사업, 연구특구,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보육서비스기관, 공립요양병원 및 복지사업(기관), 국유재산 운영기준 변경 및 확대 등
- 물 관리 범위, 구제급여 지급기준, 보훈(유족)대상 지정범위, 해양공간 계획수립(관리, 절차) 등의 조정 및 확대
- 항만시설 보안 및 검문·검색 등 국가보안(제외법령)과 관련이 있는 조항

-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직업훈련기관과 교사의 **자격기준 및 지정요건 변경 등**
- (규제정책) ⑤ 각종 규제 장치, 제도, 안전규제, 위반, 이권 통제에 관한 사항
  - 각종 규제 장치(허가, 신고, 면허, 등록, 단속, 인가, 명령 등)에 대한 **신청, 지정 및 취소 등**
  - 각종 제도(시험(면제), 최저임금, 전매제한, 진입규제, 피해자 보호, 보호대상 등)에 대한 **규정, 요건, 자격, 의무 및 관리의 강화나 완화 등**
  - 안전을 위한 규제(대상, 관리, 구역, 방화구조, 건물구조, 장치, 교육, (책임)보험, 검사, 지하시설, 운행, 예보·경보 등) **범위조정, 설치기준 보완 및 변경**
  - 위법(위반)과 침해행위의 신고 및 공표, 일몰규제 및 내구연한 변경, 운전업무 자격제한 규정, 오염방지(방역, 질병 등) **규정, 개선 및 조치 등**
  - 지상파 중간광고(공익광고) **규정 및 확대, 방송수수료, 전기공사 절차, 기준 및 근거 정비(조정)**
  - 여객운송사업 면허 발급기준, 관리의 **완화 및 변경**
- (정보공개 및 보호) ⑥ 정보공개, 행정정보, 개인정보, 정보보호 관련 사항
  - 정보평가 결과(명단, 회의록), 사무처리 정보제출 등의 **공개, 요청 및 제공**
  - 행정정보 이용 및 활용기준 **변경 및 개정**
  - 개인정보보호 상호주의, 정보제공 동의 및 고유식별 정보처리의 **규정, 기준변경 및 조정 등**
  - 정보공개 관리 및 절차, 정보보호 항목의 **등록, 추가 및 변경**
- (행정자원 정책) ⑦ 행정절차, 행정운영, 행정(민원)처리 관련 사항
  - 행정절차(자료제출(사업실적, 결산보고서 등) 의무, 예고통보, 사전협의, 소명기회, 보고의무, 청문제도, 공청회, 대리자 지정 등)의 **규정 및 변경 등**
  - 행정운영(규정(간주규정), 제도개선, 서식, 절차, 범위, 근거기준, 자격, 시설, 지정, 규격, 규정, 검사, 심사, 기한, 예외조항, 예방, 조례개정, 등기, 서면관리, 전공의 등) 관련 **불필요한 절차 변경, 삭제 및 간소화(구체화)**

- 행정(민원)처리(휴·폐업, 재개업, 사업신고, 등록, 신청, 영업신고, 대장발급 등) 관련 불필요한 절차 변경, 삭제 및 간소화(구체화)

(사업 및 업무자원) ⑧ 사업, 업무, 세금, 용어, 공직윤리, 기타 등에 관련 사항

- 사업(농어촌관광, 직접시공(공사), 곤충산업 등), 사업(영업)시설, 사업평가, 점검 및 관리기준 등에 대한 기준, 규정, 범위 및 절차의 완화 및 확대 등
- 업무(각종 교육, 금융, 전자문서, 조정신청, 재정지원(기금조성), (공공)광고 및 홍보, 등) 기준 및 처리절차에 대한 규정 및 완화 등
- 세금(과세표준, 소비세, 양도세, 관세, 등) 지급규정, 범위, 관리, 감면 및 비율조정
- 용어(조문) 및 지명의 정의 및 정비, 업종분류 및 조정, 임대료 규정, 부당계약 제한, 전문인력(필수도선사 등), 신기술, 장비 규정 및 확대
- 공직윤리 강화, 공무원 채용, 승진임용 규정 정비, 선거운동 규정 등
- 각종 정책(조문)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법, 실천요령, 처리방안, 표시방법 등의 명시
- 이외에 각 정책조문이 정책에 미미한 영향을 미칠 경우

(보조금 및 부과금) ⑨ 보조금(지원금), 형벌적 및 행정적 부과금 등에 관련 사항

- 보조금, 지원금, 보상금, 손실금, 변상금, 요양급여, 의료급여, 휴직급여, 우선지원, 공공수당 등의 지급, 관리, 지원규정 및 금액이나 비율조정
- 과태료, 벌금, 행정형벌, 각종 심의 등의 부과, 징수, 권한, 규정 및 변경 등
-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영업정지 등), 수수료, 비용산정, 요금납부, 피해보상, 포상금, 기금 출연금, 할인율(기준) 등의 기준 신설 및 변경 등
- 사회보험료, 부가세, 기부금 등 납부세액 공제기준 확대 및 변경

마. 「평가대상 제외법령」 재분류 기준 설정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에서 “실질평가 면제” 기준이 기존의 사례중심의 기준에서 정책수단의 분류기준에 「법령 및 정책의 분류」 기준과 「정책유형별 종류」 기준을 적용하

여 새롭게 설정됨에 따라 “평가대상 제외법령”의 내용도 일부 수정을 하였다.

즉, “**실질평가 면제**”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평가대상 제외법령**”과 일부 중복된 내용을 제외하였는데, 엄격하게 판단한다면 법령의 내용과 정책(조문)의 내용과는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고, “평가대상 제외법령”에서 정책평가 대상을 판단하는 것보다 “**실질평가 면제**”에서 정책평가 대상을 판단하는 것이 좀 더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것 같아서 “평가대상 제외법령”과 “실질평가 면제”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고, 아울러 “평가대상 제외법령” 기준과 “실질평가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법령 및 정책(조문)일지라도 **정책(조문)의 배경 및 상황에 따라서 실질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명심해야 한다.

<표 8> “평가대상 제외법령” 대상

<「평가대상 제외법령」 포함>
○ <b>(헌법기관)</b> 議事·소송·심판·감사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 및 사무처리 등에 관한 입법권한이 부여된 헌법기관의 소관법령 등
○ <b>(국토, 국호·국기·연호, 상훈·전례·국경일)</b> 헌법(제1편) 상기 분야에 해당하는 법령 - 국토에 관한 법령(제1편 제2장 제1절), 국호·국기·연호에 관한 법령(제1편 제2장 제2절), 상훈·전례·국경일에 관한 법령(제1편 제2장 제4절)
○ <b>(기념일, 의전)</b> 정부기념일, 의전, 경호 등에 관한 법령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령,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령 등
○ <b>(국가안보)</b> 국가안보에 관한 일체의 법령 - 계엄법, 군사기밀보호법, 방어해면법,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등
○ <b>(행정절차)</b> 행정절차만을 규정한 법령 - 행정대집행법,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심판법, 청원법, 법제업무운영규정, 소청절차규정, 인사청문회법 등
○ <b>(행정조직)</b> 행정조직·통칙에 관한 법령 중에서 개별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으로만 편제되어 있는 법령 등 - 통계를 기반으로 둘 필요성이 없는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령(연구원, 교육원, 위원회 등), 부(청) 및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정원에 관한 법령 등
○ <b>(직무 및 업무)</b> 직무범위, 업무분장, 수당, 감사, 문서 및 관인, 신분증에 관한 법령 - 직무대리규정, 직무분석규정, 경찰관직무집행법, oo회계에 관한 법령 등
○ <b>(포상 및 서훈)</b> 포상, 서훈에 관한 규정 - 상훈법, 군표창규정, 정부표창규정, 교도관기장령, 올림픽기장령 등
○ <b>(민사·상사·형사 및 재판)</b> 민사, 상사, 형사에 관한 일체의 법령 및 재판에 관한 법령

- **(소송절차)** 민사, 형사 중에서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
  -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령 등
- **(형의집행)** 형의집행에 관한 일체의 법령
  - 가석방자관리규정, 감형령, 수형자등 호송규칙,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행형법,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 관한 법률 등
- **(기타)** 통계기반 필요성이 없는 법령
  -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겨례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등

<표 9> “실질평가 면제” 대상(“평가대상 제외법령” 중복)

- < 「실질평가 면제」 포함 >**
- 위원회 조직 및 절차에 관한 법령
    - 검사적격심사위원회규정,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법 및 시행령,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검찰인사위원회규정, 경찰위원회규정, 교육혁신 위원회규정,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등
  - 권한의 위임·위탁·이양·이관에 관한 법령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 관한 규정,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 관한 법률 등
    - ※ 단, 환경오염, 난개발 등과 같이 권한의 위임과 관련하여 정책의 과급효과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계지표 활용’ 등으로 평가
  - 법령시행(일), 효력, 적용 등에 관한 법령
    - 상호신용금고법 중 개정 법률의 시행일 등에 관한 규정, 수표법의 적용에 있어서 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민법 제312조의2 단서의 시행에 관한 규정 등
  - 수수료에 관한 법령
    - 재외공관 공증 수수료 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등
  - 시험에 관한 법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교원자격검정령,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등
  - 단속에 관한 법령
    - 환경범죄등의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등
  - 개별 조직의 인사에 관한 법령
    - 경찰(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임용령·승진임용규정·복무규정, 교육공무원임용령·승진규정 등

### 3. 통계지표 선정

#### 가. 선정기준

법령의 제·개정을 통하여 도입(변경)되는 정책이 예비평가에서 ‘실질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통계지표의 선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통계지표 선정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통계지표 선정방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제·개정 법령과 직접 관련된 정책 및 조문에 대한 내용만을 검토하는데, 이렇게 검토할 경우, 정책 전체의 집행 및 평가에 필요한 통계 파악이 불가능한 사안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제·개정 법령과 직접 관련된 정책 및 조문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제·개정 법령과 정책의 관계, 상위 정책과 해당 정책 간 관계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면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통계지표 선정과정은 1차적으로 법령 제·개정에 의한 정책을 분야별로 분리하고, 2차적으로 정책의 구성요소별로 분리하고, 각 구성요소별 사례를 기준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한다.

2차적 접근방식에 있어서도 정책단계별 통계역할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특히 각 정책의 집행단계 및 평가단계에서 통계지표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 1) 정책분야별 분리기준

정책분야별 분리기준은 우선적으로 특성이 뚜렷한 소관부처를 세부분야별로 분리하였고, 세부분야별 분리가 불분명한 소관부처는 기존의 정책분야 기준으로 분리하였다.

※ 통계지표 선정사례에서는 고용분야와 문화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함

〈표 10〉 정책분야별 소관부처

	정책분야	소관부처 1	소관부처 2	소관부처 3
1	고용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2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3	고용/문화	행정안전부	소방청	
4	과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산업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6	과학/산업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보훈처
		특허청	통계청	
7	국토	국토교통부		

	정책분야	소관부처 1	소관부처 2	소관부처 3
8	농림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9	복지	보건복지부		
10	사회약자	여성가족부		
11	식/의약	식품의약품안전처		
12	재정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13	해양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14	환경	환경부	기상청	

## 2) 정책 구성요소 및 정책 단계별 분리기준

### 가) 정책대상

정책대상은 ‘정책의 적용을 받는 집단이나 사람’ 또는 ‘정책집행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집단이나 사람’을 의미한다. 이 정책대상자(집단)들은 정책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수혜자)을 볼 수도 있고 손해(정책비용부담자)를 입을 수도 있는데, 이 단계에서는 정책 실행결과에 적용·영향이나 이익·피해를 받는 대상자(집단) 및 정책대상 관련 내용에 대한 통계지표를 제시한다(정책대상 현황, 상태, 정책문제의 대안, 정책계획·수립단계의 고려사항 등).

### 나) 정책목표

정책목표는 정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의 상태인데, 여기에서는 정책의 실행결과, 정책효과에 의한 상태변화, 정책목표의 달성도, 정책결과의 평가(잘된 점, 잘못된 점), 정책결과의 성과 등에 대한 통계지표를 제시할 수 있고, 부수적인 정책 효과에 대한 통계지표 제시도 가능하다.

### 다) 정책수단

정책수단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이고,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방안이다. 이러한 정책수단은 정책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지만, 여기에서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내용, 정책 실행과정, 정책 결정과정, 자원의 활용, 관련 기관과의 협력, 구체적인 정책내용 및 정책 개정조문의 변경·도입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실질적 정책수단)에 대한 통계지표를 제시한다. 또한 폐기물 단속이라는 정책수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설득, 유인, 강압 등의 세부적인 수단이 있고, 이 세부적인 수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담당기구, 인력 등과 같은 추가적인 수단이 필요한데, 이러한 수단들 예를 들면, 정책실현을 위한 설득, 유인, 강압적인 수단과 이 수단



실현을 위한 담당기구, 인력, 자금, 공권력 등(실행적 정책수단)에 대한 통계지표도 포함될 수 있다.

### 3) 정책유형별 분리기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정책 미포함 및 통계지표 불필요 법령·정책 제외)의 분리기준은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경쟁적 규제정책”, “정보정책”, “자원정책(구성정책)”으로 분리할 수 있고, 이들 정책수단 중에서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경쟁적 규제정책”에서 “핵심수준의 정책수단 및 정책수단의 주요사항 변경”에 해당하는 정책(조문)은 “통계지표 선정의 대상”이 되고, “보조수준의 정책수단 및 정책수단의 단순사항 변경”에 해당하는 정책(조문)은 “통계지표 선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정책유형별 분리기준은 기준이 단순하여 업무담당자 기준에서 통계기반정책 평가제도에서 평가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적합하다.

## 나. 통계지표 선정 시 주의사항

### (‘실질평가 면제’ 단계)

- ① **(법령과 정책의 면제기준 상이)** 평가대상 제외법령을 근거로 시행되는 정책도 경우에 따라서 통계지표가 필요한 평가대상 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정책내용의 검토단계가 필요하고, 이와는 반대로 평가대상 제외법령은 아니지만 정책의 내용이 제외법령의 성격과 유사한 경우에도 실질평가를 면제한다.  
(예시 : 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제도 마련), ②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등)
- ② **(정책유형별 면제기준 검토단계)** 제·개정 법령 또는 정책에 대한 평가는 어느 정책유형에 해당하는지 파악 → 정보정책 및 자원정책에 해당하면 대부분의 법령 또는 정책이 실질평가 면제에 해당 → 지원정책(분배정책 또는 재분배정책) 및 규제정책에 해당하면 정책 미포함, 통계지표 불필요 및 정책수단의 보조수단(또는 단순사항 변경)의 해당여부에 따라서 실질평가 면제를 판단한다.
- ③ **(정책(조문)내용 및 배경에 따른 실질평가 대상검토)** 정책유형별 정책수단에서 정책 미포함, 통계지표 불필요 및 정책수단의 보조수단(또는 단순사항 변경) 성격의 정책(조문)일지라도, 법령 및 정책의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통계지표가 필요한 정책(조문)일 수 있으므로, 법령의 개정이유,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정책의 주요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질평가 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주의) 단순하게 용어·단어를 기준으로 “실질평가 면제”를 판단하면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책내용으로 판단해야 한다.

(‘통계지표 선정’ 단계)

- (정책 구성요소 부재) 정책의 구성요소(정책대상, 정책목표, 정책수단)가 없는 정책은 현실적으로 통계지표의 선정이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정책내용을 좀더 정확하게 살펴보고, 구성요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정책대상 선정) 정책대상이 누락되는 사례가 있는데, 정책대상의 선정방식은 정책결과에 혜택을 받는 자(집단)와 희생을 받는 자(집단)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경우에 따라서 사물(무형체)에게 혜택이나 희생이 전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관리하는 자(집단)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예시 : 특정시설, 장비, 장소, 사업, 산업, 물건, 지역, 주파수, 장려금, 실적 등)
- (정책대상 통계지표) 정책대상자(집단)에 대한 통계지표는 주로 **현황, 실태 등에 대한 자료**가 많이 이용되는데, 통계지표의 활용여부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한다.
- (정책목표 부재) 정책목표는 정책의 실행결과, 정책의 효과 등이 목표가 될 수도 있지만, 상위법령 또는 연관정책의 목표가 정책목표가 될 수 있으니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 (정책목표 통계지표) 정책목표에 대한 통계지표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는데, 정책목표는 **정책결과에 의한 상태변화, 정책의 달성도, 정책의 성과 및 평가(잘한 점, 잘못된 점)에 대한 자료**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정책수단 통계지표) 정책수단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행동방안으로, 실질적인 정책내용과 정책의 실행과정을 나타내는데, 정책수단에 대한 통계지표는 **정책내용과 정책조문을 실천, 이행하고, 정책수단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수단 및 정책의 집행상황** 등에 대한 통계지표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 분야별 선정사례

통계지표 선정방법은 법령 제·개정에 의한 정책을 정책분야 및 소관부처별로 분리하고, 그 다음에 정책구성요소별로 접근하는데, **중요한 사항은 제·개정을 통하여 도입(변경)되는 정책 및 조문에 대한 내용에서 정책구성요소(정책대상, 정책목표, 정책수단)를 정확하게 찾아서 이와 관련된 통계지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구성요소별로 접근방법은 각 구성요소별로 유사성 및 관련성이 있는 정책단계별 통계역할을 동시에 고려하여 판단하고, 특히 각 정책의 집행단계 및 평가단계에서 통계지표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통계지표 선정사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①정책대상자(집단)란 ‘정책의 적용을 받는 집단이나 사람’ 또는 ‘정책집행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집단이나 사람’을 의미하는데, 정책대상 관련 통계지표의 선정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②정책목표란 ‘정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desirable future state)’를 말하는데, 정책목표의 결과 즉, 정책목표 달성 후 나타나는 상태 변화(정책효과 또는 정책성과)는 정책대상 관련 통계지표의 선정기준이 되며, ③정책수단이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방안’으로서 정책의 실질적인 내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전개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책의 각 조문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방법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정책수단 관련 통계지표의 선정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정책수단에는 실질적 정책수단 즉, 구체적인 정책종류(교육정책, 교통정책, 환경정책, 국방정책, 경제정책 등)에 따른 직접적인 정책수단과 실행적인 정책수단 즉, 실질적인 정책수단을 실행하기 위한 집행기구, 집행요원, 자금, 공권력 등과 설득·유인·강압과 같은 순응확보수단 등과 같은 정책수단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

### 1) 기초자료

- ① 자료내용 : 통계기반정책평가 “예비평가” 결과의 「예비평가 심사보고서」
- ② 자료기간 : 2015년 상반기(1월~6월)과 2018년 하반기(7월~12월), 1,839개 조문
- ③ 수집항목 : 관리번호, 정책명, 개정이유, 주요 개정조문,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정책의 구성 및 통계(정책대상, 정책목표, 정책수단별 내용 및 통계지표), 평가의견
- ④ 수집처 : 담당부서(통계심사과) 정책평가시스템

소관부처의 한 가지 정책에 따라 여러 가지 조문이 작성되기 때문에 정책수와 조문 수는 차이가 있다.

〈표 11〉 소관부처별 정책 수

(단위: 건)

소관부처	정책 수	소관부처	정책 수	소관부처	정책 수
<b>합 계</b>	236	여성가족부	10	국가보훈처	2
보건복지부	30	식품의약품안전처	10	공정거래위원회	2
환경부	24	금융위원회	10	해양경찰청	1
국토교통부	22	중소벤처기업부	9	통계청	1
산업통상자원부	15	문화체육관광부	9	인사혁신처	1
해양수산부	14	행정안전부	7	소방청	1
농림축산식품부	13	기획재정부	7	문화재청	1
교육부	13	산림청	5	농촌진흥청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	방송통신위원회	3	기상청	1
고용노동부	11	특허청	2		

〈표 12〉 소관부처별 조문 수

(단위: 건)

정책분야	합계	소관부처 1	조문	소관부처 2	조문
고용/문화	32	행정안전부	21	소방청	11
고용	110	고용노동부	101	인사혁신처	9
문화	60	문화체육관광부	51	문화재청	9
재정	116	금융위원회	60	기획재정부	48
		공정거래위원회	18		
복지	290	보건복지부	290		
과학/산업	137	중소벤처기업부	81	방송통신위원회	27
		특허청	21	국가보훈처	8
과학	1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6		
산업	196	산업통상자원부	183	교육부	13
식/의약	130	식품의약품안전처	130		
사회약자	133	여성가족부	133		
국토	191	국토교통부	191		
해양	64	해양수산부	60	해양경찰청	4
		농림축산식품부	72	농촌진흥청	11
농림	130	산림청	47		
환경	124	환경부	109	기상청	15

2) 고용분야 (고용노동부) 사례

가) 선정기준

- ① 정책대상자(집단) : 고용형태 공시제, 산업재해, 체불임금 관련 사업자·근로자, 실업 및 구직급여 수급자, 육아 및 출산 사업자·근로자, 중견기업 및 청년미취업자, 퇴직공직자 등
- ② 정책목표 : 고용구조 개선 및 고용구조 안정, 산재근로자 복지증진, 근로자 및 구직급여자의 임금보장 및 생활안정, 육아휴직자 고용안정, 미취업자 고용촉진, 공직자윤리 확립 등
- ③ 정책수단 : (실질적 정책수단) 상시근로자 산정방법 및 유형 변경, 산재 후유증 진료비 지원, 소액체당금 지급기준 마련, 근로자 유해작업 요청권 강화, 실업급여 전용계좌 지급 및 압류금지, 육아휴직 급여와 지원금 확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국민연금 지원, 청년미취업자 고용지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관리 및 취업심사 등(실행적 정책수단)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등

나) 지표작성 사례

① 정책명과 주요내용(개정 이유)

<표 13> 부처별 정책명과 정책내용

부처명	순서	정책명	정책의 주요내용(개정 이유)
고용 노동부	1	사업주의 산재예방 범위 확대	- 산업재해 발생이 급박한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작업중지 요청, 유해작업의 도급인가 기간 규정,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대상 확대 등
	2	실업급여의 실질적 수급권 보장	-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만 입금되도록 개설한 전용계좌에 지급하고 해당계좌의 예금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
	3	청년 미취업자 고용 촉진	- 청년실업난을 고려하여 법률의 유효기간 연장, 청년미취업자 고용지원 등의 범위를 중소기업체에서 중견기업체로 확대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함
	4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관리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의 업무범위 및 취업심사 결과에 대한 공개항목, 이력공시 항목 등 취업제한제도 규정을 구체화 등 공직윤리제도 미비점 보완

② 정책 구성요소와 통계지표

〈표 14〉 통계지표 선정사례

순서	정책대상		정책목표		정책수단	
	내용	통계지표	내용	통계지표	내용	통계지표
1	산업재해 관련 사업주, 근로자	사업장 현황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증진	근로자 건강현황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권 강화 유해작업 도급인가 유효기간 설정 안전보건조치 대상 확대	유해작업 환경 현황 유해작업 인가 현황 산업재해 현황
2	실업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지급현황	실직 근로자의 생활안정		실업급여 전용 계좌 지급 실업급여 압류 금지	실업급여수급계좌 발급 현황 실업급여 압류 현황
3	청년 미취업자, 중견 기업체		청년 미취업자 고용 촉진	청년고용 현황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에 중견기업체 포함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현황 청년선호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현황
4	취업 제한대상 퇴직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 현황	공직자 윤리확립		취업 제한대상 사기업체 등 관리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 등 현황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현황

3) 문화분야 (문화체육관광부) 사례

가) 선정기준

- ① 정책대상자(집단) : 매장지 관리자, 생활체육인, 어린이 통학버스 관리자, 체육·관광시설 관리자·이용자, 문화산업 투자자 및 관련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등
- ② 정책목표 : 매장문화 관리 강화, 국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 편의시설 관리·감독 강화, 문화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문화산업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등
- ③ 정책수단 : (실질적 정책수단)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발굴 및 조사기관 관리, 국민 체력인증제, 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시스템 운영,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범위 규정, 체육시설업 등록, 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시스템 운영,

체육시설·관광시설·유원시설 안전점검 보완, 관광 편의시설 의무화, 문화영향평가 결과환류, 공모문화산업 전문회사 관리요건 신설 등(실행적 정책수단) 체력증진 인증기관 지정 및 예산지원, 국민생활체육회 설립, 체육동호인조직 육성 및 지원 등

나) 지표작성 사례

① 정책명과 주요내용(개정 이유)

〈표 15〉 부처별 정책명과 정책내용

부처명	순서	정책명	정책의 주요내용(개정 이유)
문화체육 관광부	1	생활체육 활성화	- 생활체육 참여자의 재미와 도전의식 고취를 위한 인증기준과 보상 마련으로 자발적 수요를 촉진, 맞춤형 운동처방, 체력증진 등 과학적·체계적 체력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민체력인증제를 도입
	2	체육시설 안전관리	-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필요 재원 확보 노력의무를 부여하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며, 체육시설 안전관리 업무를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육시설 안전사고를 예방
	3	관광사업 육성	- 현행 관광사업 종류 외에 관광 환경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신유형의 관광사업체를 포괄할 수 있는 분류 신설

② 정책 구성요소와 통계지표

〈표 16〉 통계지표 선정사례

순서	정책대상		정책목표		정책수단	
	내용	통계지표	내용	통계지표	내용	통계지표
1	- 생활체육 참여자	- 국민 생활체육 참여 현황 - 국민 체력 측정 현황	- 건강한 삶 구현		- 체력인증기관 지정 - 국민체력인증제 - 체력인증기관 예산지원	- 체력인증기관 지정 현황 - 체력인증 현황 - 체력인증기관 예산지원 현황
2	- 체육시설 이용자, 관리자 (기관)	- 공공 체육시설 현황	- 국민 건강증진	- 국민 체력 측정 현황	- 체육시설업 등록·신고 -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 체육시설 정보관리	- 등록신고 체육시설 현황 - 체육시설 안전점검 현황

순서	정책대상		정책목표		정책수단	
	내용	통계지표	내용	통계지표	내용	통계지표
3	- 관광사업자 등	- 관광사업체 기초통계	- 관광사업 육성		종합시스템 운영 - 체육시설 안전점검 - 관광 편의시설업 내 세부업종으로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	- 관광지원 서비스업 지정 현황

라. 통계지표 선정사례

1) 통계지표 선정이 좋은 사례

통계지표 선정에 있어서 지표선정도 중요하지만, 정책구성요소의 내용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통계지표 선정에 있어서 좋은 사례를 뽑은 기준은 정책의 구성요소에서 각 요소별 내용과 통계지표 선정이 **정책별로 타당성 있게 선정**이 되었고, 또한 정책의 각 요소별 통계지표 선택에 있어 (모든 종류를 모두 나열하지는 않았지만) 각 **정책의 조문별로 통계지표를 선정**하려고 노력하였고, 정책대상도 **자연인 및 법인 위주**로 작성하였다.

<표 17> 통계지표 선정사례(좋은 사례)

정책명	정책의 구성 및 통계					
	정책대상		정책목표		정책수단	
	내용	통계지표	내용	통계지표	내용	통계지표
도시가스배관 안전성 강화	· 도시가스 사업자	- 도시가스 사업자 현황	· 도시가스 배관안전성 강화	- 도시가스 사고 현황	· 배관건전성 관리프로그램 작성·수행	- 배관건전성 관리프로그램 수행계획서 작성 현황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현황	· 전자금융 거래안전	- 전자금융 거래 현황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 제한	- 금융회사 등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현황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지원 확대	· 농신보 지원대상	- 귀농 귀촌인 현황	· 농신보 지원확대	- 농림수산 사업자 농신보 기금운용 현황	· 예비농어업인 보증지원 대상포함	- 예비농어업인 보증지원 현황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 농촌 및 농업인 등	- 농업 경영체 등록 현황	· 농업인 소득 증대	- 농가소득 현황	· 농촌 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 농촌 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현황



정책명	정책의 구성 및 통계					
	정책대상		정책목표		정책수단	
	내용	통계지표	내용	통계지표	내용	통계지표
원전비리 방지	· 원자력발전사업자 등	- 원자력 발전 공공기관 현황	· 원전비리 방지	- 원전고장 및 사고 현황	· 임직원 재산등록	- 임직원 재산등록 현황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현황	· 빈곤예방 및 저소득 계층보호	- 빈곤계층 생활실태 및 복지 욕구	· 긴급복지 지원대상 범위확대	- 최저생계비 현황
오리지널사가 얻은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조치	· 제약회사	- 제약회사 현황	·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차단	- 건강보험 재정 현황	· 오리지널사가 얻은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조치	- 오리지널사가 얻은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현황
전기공사업 발전	· 전기공사 업체	- 전기공사 업체 현황	· 전기공사업 발전도모	- 전기공사 실적	· 전기공사 종류 확대	- 전기공사 기술자 교육훈련기관 지정 현황
사업주의 산재예방 범위 확대	· 사업주, 근로자	- 사업장 현황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증진	- 근로자 건강 현황	·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청권 강화	- 유해 작업환경 현황
취약계층 에너지이용권 지원	·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계층	-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현황	·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지원	- 가구당 에너지 소비량	· 에너지이용권 제도도입	- 에너지이용권 지급·사용 현황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강화	·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자	- 어린이 통학버스 현황	· 영유아의 안전한 통학환경 보장	-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현황	·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자동승 의무화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및 운영 현황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 육아 휴직자	- 육아 휴직제도 이용 현황	· 육아휴직 근로자의 계속 고용	- 경력단절 여성 현황	· 육아휴직급여 및 사업주 지원금 비율 확대	- 육아휴직자 직장 복귀 현황
고압가스 품질관리	· 고압가스 사업자	- 고압가스 사업장 현황	· 고압가스 품질관리	- 고압가스 사고 현황	· 고압가스 품질기준규정 및 품질검사	- 고압가스 품질검사 현황
학원 어린이통학 차량의 안전 강화	· 학원통학 차량이용 어린이	-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현황	· 통학차량 이용 어린이의 안전확보	-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사고 현황	·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도로교통법 준수	-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 이수 현황

정 책 명	정책의 구성 및 통계					
	정책대상		정책목표		정책수단	
	내 용	통계지표	내 용	통계지표	내 용	통계지표
산후조리원 관리 강화	· 산후 조리원 사업자, 이용자	- 산후 조리원 개설 현황	· 산후 조리원 소비자 피해예방	- 산후 조리원 감염발생 보고 현황	· 산후조리업자 책임보험 가입의무화	- 산후조리원 책임보험 가입 현황
에너지이용 합리화	·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 에너지 사용량 신고업체 현황	· 에너지 이용 합리화	- 에너지 절약 현황	· 우수 에너지 절약활동 및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 우수 에너지 절약활동 및 성과인센티브 제공 현황
학점은행제	· 학점 은행제 교육훈련 기관, 학습자	- 학점인정 과정 운영기관 수	· 학점 은행제로 평생교육 실현	- 학점 은행제 학위 취득자 수	· 교육훈련기관 정보공시 의무화 및 부실운영 별점제 도입	- 교육훈련기관 정보공시 현황

## 2) 통계지표 선정이 나쁜 사례

모든 정책에는 정책의 구성요소(정책대상, 정책목표, 정책수단)가 존재한다. 따라서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모든 정책도 **정책구성요소 항목별로 내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각 구성요소별 내용에 관련된 통계지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존재하고, **요소별로 동일한 통계지표**를 사용할 수 없다. 각 구성요소별 통계지표 선정기준에서, 정책대상은 주로 정책대상의 상태 및 현황에 대한 지표를 제시하고, 정책목표는 정책의 실행결과, 상태변화, 목표달성도, 정책평가(잘된 점, 못된 점), 정책성과 등에 대한 지표를 제시하고, 정책수단은 정책목표(정책내용 또는 조문)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사항, 이행방법, 실행수단 등에 대한 지표를 제시한다. 정책(조문) 내용과 통계지표의 관련성 정도를 논하기는 어렵지만 **서로 연관성 있는 통계지표 선택**이 필요하다.

〈표 18〉 통계지표 선정사례(나쁜 사례)

정 책 명	정책의 구성 및 통계					
	정책대상		정책목표		정책수단	
	내 용	통계지표	내 용	통계지표	내 용	통계지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 성폭력 피해자 및 보호시설		· 성폭력 피해자 보호로 국민의 인권증진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외국인 보호시설 추가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정책명	정책의 구성 및 통계					
	정책대상		정책목표		정책수단	
	내용	통계지표	내용	통계지표	내용	통계지표
주택도시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	· 주택도시 기금		· 주택도시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		· 주택도시 기금의 조성 및 운용	- 주택도시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
매장문화재 관리 강화	· 매장 문화재		· 매장 문화재 관리강화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지표조사	-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현황
농어촌 민박 사업 관리 강화	· 농어촌 민박사업	- 농어촌 민박 사업자 현황			· 농어촌 민박 사업자 신고	- 농어촌 민박사업자 현황
해상운송 여객사업 관리 강화	· 해상여객 운송사업		· 해상운송 질서유지		· 해상여객 운송사업 면허제	- 해상여객선 현황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강화	· 어린이 놀이시설	-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			·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및 정기 안전검사	- 어린이 놀이시설 검사 현황
수취인 미거주 우편물 효율적 전송	· 수취인 미거주 우편물		· 수취인 미거주 우편물 효율적 전송		· 지환 우편물 현황 파악	- 지환우편물 현황
	· 노인, 노인복지 시설		· 노인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		· 노인 건강진단 및 보건교육에 성별 다빈도 질환 반영	- 노인의 건강검진 및 다빈도질환 급여 현황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 위치정보 사업자				· 위치정보 사업자 허가	- 위치정보 사업자 허가 현황
연구장려금 회수	· 연구 장려금		· 연구 장려금 환수		· 연구장려금 수급	- 연구장려금 수급 현황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 강화	·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로 확대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현황
전과자원 이용 및	· 주과수		· 전과자원 이용 및		· 주과수 이용권	- 주과수 이용권 현황

정책명	정책의 구성 및 통계					
	정책대상		정책목표		정책수단	
	내용	통계지표	내용	통계지표	내용	통계지표
관리의 효율화			관리의 효율화			
체육시설업 관리	· 체육시설	- 등록신고 체육시설 현황			· 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시스템 운영	-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현황
재해구호관리	· 자연 및 사회재난	- 재난발생 (인적 및 자연) 현황			· 임시주거시설 지정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현황
도시지역경제 활성화	· 도시		· 도시지역 경제 활성화		·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현황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강화	· 관광객 이용시설				· 관광객 이용시설 등록	- 관광객 이용시설업 현황
계측업 활성화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관리	· 계측업자	- 계측업 등록 현황			· 계측업등록	- 계측업등록 현황
소방안전 교부세 관리	· 소방안전 교부세	- 소방안전 교부세 교부 현황			· 소방안전 교부세 교부	- 소방안전 교부세 교부 현황
	· 특별 교부세	- 특별 교부세 교부 현황			· 특별교부세 교부	- 특별교부세 교부 현황
과학벨트 사업의 효율적 관리	· 과학벨트		· 과학벨트 사업의 효율적 관리		· 거점지역 입주승인	- 거점지역 입주승인 현황
지방공기업 관리	· 지방 공기업	- 지방 공기업 현황			· 지방공기업 설립 및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	- 지방공기업 현황
사회재난 피해 지원	· 사회재난	- 사회재난 발생 현황			·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	- 재난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현황
알뜰폰시장 활성화	· 알뜰폰		· 알뜰폰 시장 활성화		· 알뜰폰 가입	- 알뜰폰 가입 현황

정 책 명	정책의 구성 및 통계					
	정책대상		정책목표		정책수단	
	내 용	통계지표	내 용	통계지표	내 용	통계지표
손해평가인 관리	· 손해 평가인	- 손해 평가인 현황			· 손해평가인 자격관리	- 손해평가인 현황
운석의 체계적 관리	· 운석		· 운석의 체계적 관리		· 운석 등록	- 운석 등록 현황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무 개선	· 관광지 · 관광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무 개선		· 관광지 및 관광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대상	-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항만시설의 범죄예방 및 보안 확보	· 항만시설		· 항만시설 범죄예방 및 보안 확보		· 항만시설 폐쇄회로 텔레비전설치 및 영상기록 관리의무 부여	-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현황
기반시설통합 ·정비	· 도시·군 계획시설		· 기반시설 합리성 및 이행 가능성 제고		· 기반시설종류 통합·정비	- 도시·군 계획시설 현황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강화	· 직장 어린이집 설치대상 사업주, 이용자	- 직장 어린이집 설치 및 이용 현황	·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 강화	- 직장 어린이집 설치 및 이용 현황	·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 예외적 허용	- 직장 어린이집 설치 및 이용 현황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공익기능 증진	· 산지내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시설 등		·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공익기능 증진		·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을 산지일시사용 허가대상에 추가	- 산지일시 사용허가 현황
농지의 효율적 이용	· 농지 등		· 농지의 효율적 이용		· 농지임대차 및 사용대차 허용범위 확대	- 농지의 임대차 현황
소방서비스 질의 개선 및 국민안전의 강화	· 소방장비 등		· 소방 서비스 질 개선 및 국민 안전강화		· 소방장비 실태조사 실시	- 소방장비 실태

### 제3장 업무활용 체크리스트 개발

#### 1. 「평가대상 제외법령」 체크리스트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에서 재분류 “실질평가 면제” 기준 설정에 따라 “평가대상 제외법령”에서 발생하는 중복을 제외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다.

〈표 19〉 “평가대상 제외법령” 대상

번호	「평가대상 제외법령」 주요내용
①	○ (헌법기관) 議事·소송·심판·감사의 절차, 내부규율 및 사무처리 등에 관한 입법권한이 부여된 헌법기관 소관법령 등
②	○ (국토, 국호·국기·연호, 상훈·전례·국경일 등) 헌법의 각 분야에 해당하는 법령 - 국토에 관한 법령, 국호·국기·연호에 관한 법령, 상훈·전례·국경일에 관한 법령
③	○ (기념일, 의전 및 경호) 정부기념일, 의전, 경호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 각종 기념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 대통령 경호,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령 등
④	○ (국가안보) 국가안보에 관한 일체의 법령 - 계엄, 군사기밀, 방어해면, 군수품관리, 방위사업 등
⑤	○ (행정절차) 행정절차만을 규정한 법령 - 행정대집행, 행정조사 및 심판, 행정 및 소청절차, 청원, 법제업무운영, 인사청문회 등
⑥	○ (행정조직 설치 및 운영) 행정조직·통칙 중에서 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으로만 편제되어 있는 법령 등 - 연구원, 교육원, 위원회 등, 부(청) 및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정원에 관한 법령 등
⑦	○ (직무 및 업무) 직무범위, 업무분장, 수당, 문서, 관인 및 신분증에 관한 법령 및 규정 - 직무대리, 직무분석, 직무집행, 회계에 관한 법령 등
⑧	○ (포상 및 서훈) 포상, 서훈에 관한 법령 및 규정 - 상훈, 군표창, 정부표창, 교도관기장, 올림픽기장 등
⑨	○ (민사·상사·형사적 재판) 민사, 상사, 형사적 재판에 관한 일체의 법령
⑩	○ (소송절차) 민사, 형사 등에서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 - 민사, 가사, 형사, 행정, 소송비용 등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령 등
⑪	○ (형의집행) 형의 집행에 관한 일체의 규정, 규칙, 법령 - 가석방, 감형, 호송, 교도소 설치·운영, 행형, 형의 집행, 정지, 수용자 관련 법령 등
⑫	○ (기타) 통계기반 필요성이 없는 법령 - 전통소싸움, 사전남북공동편찬 관련 법령 등

주: “평가대상 제외법령”의 판단기준은 제·개정을 하려는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법령 제·개정을 통한 정책 또는 조문에 의한 판단기준이 아님)

〈표 20〉 “평가대상 제외법령”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항목		
① 해당 하는 법령이 한 개 이상 있습니까?	② 몇 번 항목의 법령에 해당합니까? (복수응답 가능)	③ 해당되는 법령이 없다면 어느 법령 제·개정에 해당합니까? (①번 문항에서 ‘아니오’로 응답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2. 「실질평가 면제」 체크리스트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에서 재분류 “실질평가 면제” 기준 설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질평가 면제”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표 21〉 “실질평가 면제” 체크리스트

「실질평가 면제」 항목	해당여부
○ (기관 및 법령정비) 기관의 설립, 기본법 업무, 법령 정비와 관련된 지정, 운영, 조정, 용어, 시기 등 단순사항의 정의 및 변경 - 기관설립(지정, 기관명칭, 임명권자) - 기본법 업무(운영 및 관리계획) - 법령 미비사항(용어, 조항상향, 적용시기, 경과, 인용, 범위변경 등) 정비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위원회 및 심의회) 위원회의 구성, 운영, 정비, 업무, 위원의 자격, 심의절차 등의 단순한 규정 및 관련 계획수립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위탁 및 위임) 상부기관의 권한, 업무 등을 하부기관 및 소속단체에 위탁·위임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분배(지원)정책) 정부지원 사업, 공공시설 및 장치, 재정사업, 사회보장 관련 절차, 관리, 변경 및 조정 등 정책의 지원수단(사항) - 각종 정부지원 사업(공공보험, 공유지, 공공시설, 임대주택, 자활기업 등) - 공공장치 및 시설(도로, 건물, 철도, 교통, 충전시설 등) - 사회보장, 재정지원, 교육기관, 훈련기관, 보육기관, 요양병원, 구제급여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규제정책) 각종 규제장치, 제도, 안전규제, 위반, 이권 통제 등과 관련된 단순한 정의, 기준, 지정, 근거, 신청, 변경 및 보완사항 설명 - 각종 규제장치(허가, 신고, 면허, 등록, 단속, 인가, 명령 등) - 각종 제도(시험, 최저임금, 전매제한, 진입규제, 피해자 보호 등) - 안전규제(대상, 관리, 구역, 구조, 장치, 교육, (책임)보험, 검사, 운행, 예보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실질평가 면제」 항목	해당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법(위반)과 침해행위, 일몰규제, 오염방지(방역, 질병 등)</li> <li>- 지상과 광고, 방송수수료, 전기공사, 여객운송사업 면허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정보공개 및 보호)</b> 정보공개, 행정정보, 개인정보, 정보보호와 관련된 요청, 제공, 변경, 등록, 추가 사항 등 통계지표 실효성이 없는 항목 설명</li> <li>- 정보평가 결과(명단, 회의록), 사무처리 정보제출 등</li> <li>- 행정정보, 정보공개, 정보보호 항목 등</li> <li>- 개인정보보호 상호주의, 정보제공 동의 및 고유식별 정보처리 등</li> </ul>	<p><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행정자원 정책)</b> 행정절차, 행정운영, 민원처리 등과 관련된 규정, 변경, 삭제, 간소화(구체화) 사항 등 단순한 행정사항 설명 및 통계지표 실익이 없는 사항 설명</li> <li>- 행정절차(자료제출, 사업실적, 사전협의, 소명기회, 청문제도, 공청회 등)</li> <li>- 행정운영(규정, 제도개선, 서식, 절차, 범위, 자격, 지정, 규격, 규정, 검사, 심사, 기한, 예외조항, 예방, 조례개정, 등기, 서면관리, 전공의 등)</li> <li>- 행정(민원)처리(휴·폐업, 사업신고, 등록, 신청, 영업신고, 대장발급 등)</li> </ul>	<p><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사업 및 업무자원)</b> 사업, 업무, 세금, 용어, 공직 등에 관한 규정, 절차, 기준, 범위, 조정 등 단순한 사업과 업무 관련 설명 및 정책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설명</li> <li>- 사업(농어촌관광 등), 사업(영업)시설, 사업평가, 점검, 기준 등</li> <li>- 업무(교육, 금융, 문서, 조정신청, 재정, 기금, 광고 및 홍보, 등)</li> <li>- 세금(과세표준, 소비세, 양도세, 관세, 등)</li> <li>- 용어(조문) 및 지명, 업종분류, 임대료, 부당계약, 전문인력, 신기술, 장비 등</li> <li>- 공직윤리 강화, 공무원 채용, 승진임용 규정, 선거운동 등</li> </ul>	<p><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보조금 및 부과금)</b> 보조금(지원금), 형벌적 및 행정적 부과금 등에 관련 단순한 관리, 권한, 규정, 비율조정, 변경사항 등에 대한 설명</li> <li>- (지원)보조금, 지원금, 보상금, 손실금, 요양급여, 의료급여, 휴직급여 등</li> <li>- (규제)과태료, 벌금, 행정형벌, 각종 심의 등</li> <li>- (행정)과징금, 행정처분, 수수료, 피해보상, 포상금, 기금, 할인율 등</li> </ul>	<p><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p>

주: 1) “실지평가 면제”는 단순히 용어, 문장, 조문(항목) 하나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정책의 내용 및 법령의 재·개정 사항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2) “실지평가 면제”는 「정책과 조문에 대한 체크리스트」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음



## 제4장 결론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표준화 연구의 목적은 현재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업무매뉴얼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고, 정책평가에 대한 평가방법을 표준화하여 평가의 신속성, 전문성 및 통일성을 기하고자 한다.

통계기반정책평가 표준화 연구의 내용은 첫째, “법령과 각종 정책에 대한 분류기준” 설정과 통계지표 활용대상 선정에 위하여 “평가결과 유형”과 “실질평가 면제” 기준을 보완하였는데, 특히 기존의 ‘실질평가 면제’ 기준을 재분류하여 담당자의 업무효율화 제고를 기하였다. 둘째, 통계기반정책평가 업무의 실질평가 사례를 기준으로,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통계지표 선정 시 주의사항, 분야별 통계지표 선정사례, 통계지표 선정이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를 작성하여 담당자의 정책평가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셋째, 통계기반정책평가 신청서(예비평가요청서 등)에 체크리스트를 포함하여 통계기반정책평가의 대상여부를 1차적으로 파악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를 기하였다. 이외에도 유사제도 비교,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업무에 참조하도록 하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예비평가와 실질평가에서 법령 및 각종 정책에 대한 분류기준이 필요하여, 정책의 구성요소와 정책유형별 분류기준을 활용하여 통계기반정책의 「법령 및 정책의 분류」 기준을 작성하였다. 이 기준은 전체 평가대상 법령 및 정책에서 “평가대상 제외법령”을 제외하고, “정책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법령”과 “통계지표 활용이 불필요한 법령, 정책 및 조문”을 제외한 나머지 정책(조문)을 핵심수단(주요사항 변경)과 지원수단(단순사항 변경)으로 분리하고, 정책(조문)의 핵심수단(주요사항 변경)을 통계기반정책평가 대상으로 정하고, 나머지 정책은 평가대상 제외로 정하였다.

〈표 22〉 법령 및 정책의 분류

평가대상 제외법령 <평가제외>	평가대상 포함법령 - ①번 기준					
	정책 미포함 법령 <평가제외>	통계지표 불필요한 법령·정책 <평가제외>				
		통계지표 불필요한 법령·정책 <평가제외>	정책포함 법령 - ②번 기준			
			통계지표 필요한 법령·정책 - ③번 기준			
			정책목표 및 수단 - ④번 기준			
		규제	지원	정보	자원 등	
		핵심수단 및 주요사항 변경	<통계기반정책평가 대상>			
		보조수단 및 단순사항 변경	<평가 제외>			

「실질평가 면제」 기준은 두 가지로 분리하여 작성하였다. 한 가지는 예비평가의 ‘평가결과 유형’과 ‘실질평가 면제’ 기준을 보완한 결과에 기존(통계심사과)의 “실질평가 면제” 기준을 반영하여 작성하였다. 이 기준은 기존 업무담당자는 편리함이 있지만, 평가내용에 중복성이 있고, 지속적인 활용가능성(체크리스트 작성) 낮다는 단점이 있다.

다른 한 가지 기준은 정책을 유형별(분배정책, 재분배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경쟁적 규제정책, 정보정책, 자원정책)로 분리하고, 실질평가 면제 항목을 ‘정책 미포함 및 통계지표 불필요 법령·정책’과 ‘정책수단의 보조수준 및 단순사항 변경’ 두 종류로 분리하여 “실질평가 면제 재분류”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 기준은 새로운 업무담당자의 평가기준 활용이 용이하고, 지속적인 활용가능성(체크리스트 작성 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예비평가에서 ‘실질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정책은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통계지표를 선정·제시해야 한다. 이 통계지표는 정책(조문)을 정책대상, 정책목표, 정책수단으로 구분하여 선정해야 하는데, 각 요소별로 통계지표 선정기준을 제시하였으나, 실무적으로는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실질평가 사례”를 활용하여 담당자들이 통계지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을 검토하여 제시(실질평가 면제단계와 통계지표 선정단계로 구분)하고, 분야별로 일부 통계지표 선정사례를 살펴보고, 앞에서 제시한 ‘통계지표 선정’ 기준을 기반으로 ‘통계지표 선정이 좋은 사례’와 ‘통계지표 선정이 나쁜 사례’를 선정하여 비교하는 단계가 있어서, 추후에 실무에서 예시로 활용할 수 있다.

- 정책요소별 통계지표 선정기준
  - 정책대상 : 정책 실행결과에 적용·영향이나 이익·피해를 받는 대상자(집단) → (통계지표) **정책대상 현황, 상태**, 정책문제의 대안, 정책계획·수립단계의 고려사항 등
  - 정책목표 : 정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의 상태 → (통계지표) **정책 실행결과, 정책효과 상태변화, 정책목표 달성도, 정책결과 평가(잘된 점, 잘못된 점), 정책결과 성과** 이외에 부수적인 정책효과 등
  - 정책수단 : 상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이행·행동방안(가장 중요) → (통계지표) 정책 실행과정, 정책 결정과정, 관련기관 협력 등, **정책내용과 정책조문을 실천, 이행하고, 정책수단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수단 및 정책의 집행상황** 등

그리고 재분류한 ‘실질평가 면제’ 기준과 기존의 ‘실질평가 면제’ 기준을 조합하여, “실질평가 면제”와 “평가대상 제외법령”을 재분류하고, 통계기반정책평가 제외 및 면제 대상을 1차적으로 선별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예비평가 단계에서 활용하

도록 하였다.

실무활용의 측면에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양한 정책에 대하여 통계지표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재설정하고, 필요한 통계지표를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보완하여 통계기반정책평가 운영의 전문성 및 통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고, 평가사례를 기준으로 담당자들이 통계지표 선정에 있어서 주의할 사항과 고려해야 할 내용을 명시하여 평가업무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예비평가 단계에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각 부처의 정책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하여 평가업무의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참고문헌

- 강제상 외(2011). 『정책단계별 교육교재 개발』. 중앙공무원교육원 용역과제.
- 권덕철(2016). 「통계는 수치를 넘어서 정책이다」. 보건복지포럼.
- 박홍윤(2012). 『정책평가론』. 대영문화사.
- 오철호(2017). 「문제제기: 데이터 기반 정책분석평가의 연구와 적용」.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7권 2호. p. 155~167.
- 윤광석(2016). 『정책수립시 데이터 활용 강화방안 연구』. 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 임현(2014). 「정책과 법의 관계에 대한 모색」. 공법학연구 제15권 제2호 p. 85~102.
- 정정길 · 최종원 · 이시원 · 정준금 · 정광호(2017).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 조현구(2018). 「통계와 정책의 연계 강화방안 연구: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p. 41~55.
-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16),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지침』.
- 국무조정실(2018), 『2018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 국민권익위원회(2016), 『2016 공직유관단체 사규 부패영향평가 매뉴얼』.
- 법제처(2018), 『2018 법제업무편람』.
- 여성가족부(2019), 『2019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 통계청(2016), 『2016년도 통계기반정책평가 및 활용사례집』.
- 통계청(2017), 『통계기반정책평가 운영매뉴얼』.
- 통계청(2017), 『2017년도 통계기반정책평가지침』.
- 행정안전부(2008), 『정책품질관리 매뉴얼』.
- 환경부(2017),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매뉴얼』.
- Arman, Bidarbakht. Nia(2018). Policy-Data Integration:key to achieving the SDGs for all. UN ESCAP.
- ESCAP(2018). EPIC(Every Policy Is Connected): A Policy-Data integration tool(Version 1.2). EU.

##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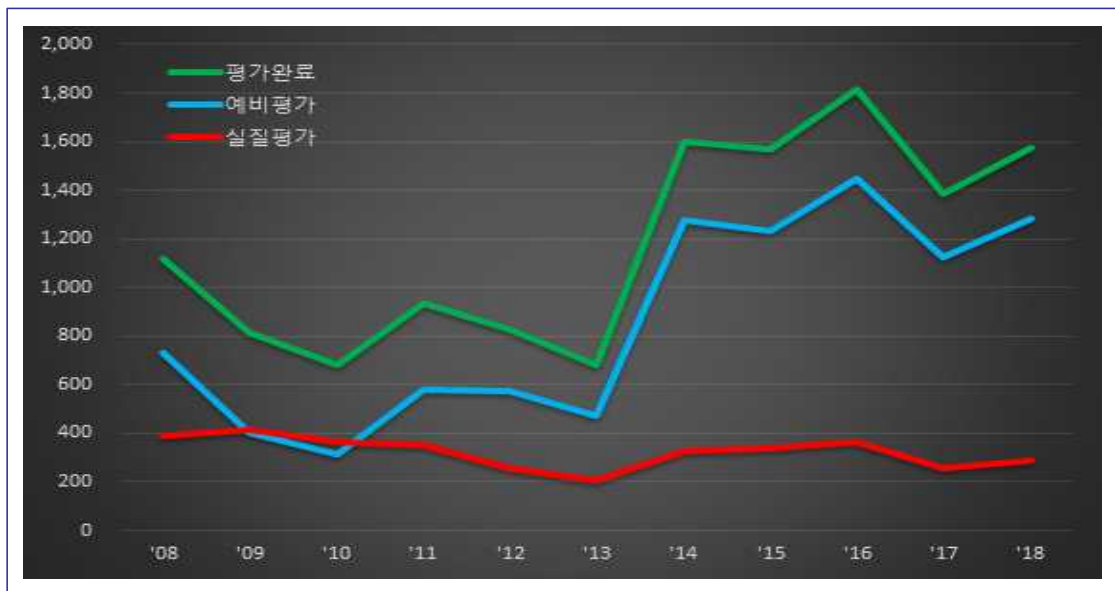
<부표 1> 연도별 통계기반정책평가 유형별 현황 (법령별 평가와 격차)

(단위: 건, %)

	평가완료	예비평가	실질평가	실질평가율*		
				실질평가율*	통계 개발·개선	통계지표 활용권고
<b>전체</b>	<b>12,993</b>	<b>9,436</b>	<b>3,557</b>	<b>27.4</b>	<b>440</b>	<b>3,117</b>
2008년	1,116	729	387	34.7	67	320
2009년	813	400	413	50.8	43	370
2010년	679	314	365	53.8	30	335
2011년	937	583	354	37.8	43	311
2012년	825	571	254	30.8	36	218
2013년	681	474	207	30.4	30	177
<b>2014년**</b>	<b>1,603</b>	<b>1,275</b>	<b>328</b>	<b>20.5</b>	<b>25</b>	<b>303</b>
2015년	1,570	1,232	338	21.5	39	299
2016년	1,814	1,447	367	20.2	56	311
2017년	1,383	1,126	257	18.6	42	215
2018년	1,572	1,285	287	18.3	29	258

주: ※ 실질평가율(%) = (실질평가법령수 / 평가요청법령) × 100

※※ 2014년 통계기반정책평가 범위 시행규칙(총리령·부령)까지 확대



[부그림 1] 연도별 평가현황

〈부표 2〉 부처별 통계기반정책평가 유형별 평가 현황

(단위: 건, %)

	평가완료	비중	예비평가	실질평가				
					비중	실질 평가율	통계 개발·개선	통계지표 활용권고
전체	12,993	100.0	9,436	3,557	100.0	27.4	440	3,117
국토교통부	2,111	16.2	1,623	488	13.7	23.1	53	435
보건복지부	1,268	9.8	892	376	10.6	29.7	76	300
환경부	883	6.8	609	274	7.7	31.0	30	244
산업통상자원부	831	6.4	617	214	6.0	25.8	28	186
해양수산부	777	6.0	589	188	5.3	24.2	26	162
기획재정부	725	5.6	501	224	6.3	30.9	7	217
행정안전부	643	4.9	464	179	5.0	27.8	16	163
농림축산식품부	625	4.8	407	218	6.1	34.9	38	180
교육부	617	4.7	445	172	4.8	27.9	23	149
문화체육관광부	558	4.3	423	135	3.8	24.2	27	108
고용노동부	424	3.3	294	130	3.7	30.7	10	120
금융위원회	424	3.3	267	157	4.4	37.0	6	15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09	3.1	317	92	2.6	22.5	15	77
식품의약품안전처	359	2.8	253	106	3.0	29.5	17	89
산림청	292	2.2	221	71	2.0	24.3	12	59
중소벤처기업부	276	2.1	185	91	2.6	33.0	12	79
여성가족부	273	2.1	207	66	1.9	24.2	12	54
국가보훈처	206	1.6	149	57	1.6	27.7	0	57
특허청	159	1.2	124	35	1.0	22.0	3	32
공정거래위원회	151	1.2	111	40	1.1	26.5	4	36
방송통신위원회	136	1.0	91	45	1.3	33.1	4	41
경찰청	124	1.0	89	35	1.0	28.2	4	31
소방청	117	0.9	85	32	0.9	27.4	5	27
문화재청	114	0.9	89	25	0.7	21.9	3	22
원자력안전위원회	65	0.5	52	13	0.4	20.0	1	12
법제처	63	0.5	63	0	0.0	0.0	0	0
인사혁신처	62	0.5	44	18	0.5	29.0	0	18
외교부	54	0.4	41	13	0.4	24.1	2	11
기상청	40	0.3	24	16	0.4	40.0	1	15
해양경찰청	40	0.3	27	13	0.4	32.5	0	13
국방부	34	0.3	24	10	0.3	29.4	2	8
통계청	31	0.2	24	7	0.2	22.6	2	5
국무조정실	29	0.2	24	5	0.1	17.2	0	5
법무부	25	0.2	21	4	0.1	16.0	1	3
국민권익위원회	18	0.1	14	4	0.1	22.2	0	4
통일부	14	0.1	13	1	0.0	7.1	0	1
농촌진흥청	8	0.1	5	3	0.1	37.5	0	3

## 집필진

- 이동수(통계청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 사무관)

연구보고서 2019-09

### 통계기반 정책평가 표준화 연구

---

인 쇄 2020년 5월 18일  
발 행 2020년 5월 19일  
발 행 인 통계개발원장 전영일  
발 행 처 통계청 통계개발원  
35220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TEL.(042)366-7100 Fax.(042)366-7123  
홈페이지 <http://sri.kostat.go.kr>

ISSN(Online)

---

